碩士學位 論文
指導敎授 姜錫中

# 韓國의 貿易클레임 現況과 解決方案에 관한 硏究

## — 韓·日間의 比較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Present Status of Claims and the Preventive Plans of Ther[illegible] Trading Business

1992年


漢城大學校 經營大學院
經 營 學 科
企業管理 專攻
姜 棟 鐺

碩士學位 論文
指導敎授 姜錫中

# 韓國의 貿易클레임 現況과 解決方案에 관한 硏究

A Study on the Present Status of Claims and the Preventive Plans of Them in Korean Trading Business

위 論文을 經營學 碩士學位 論文으로 提出함

1993年 8月 日


漢城大學校 經營大學院
經 營 學 科
企業管理 專攻
姜 棟 鐥

# 姜棟鐥의 經營學 碩士學位論文을 認准함

1993年 8月 日

審査委員長 印

審査委員 印

審査委員 印

# 目　　次


第 1 章　序　論 ---------- 1

　第 1 節　研究의 目的 ---------- 1

　第 2 節　研究의 方法과 範圍 ---------- 2

第 2 章　貿易클레임의 形態와 發生原因 ---------- 3

　第 1 節　貿易클레임의 意義와 類型 ---------- 3

　　1. 貿易클레임의 意義 ---------- 3

　　2. 貿易클레임의 類型 ---------- 4

　第 2 節　貿易클레임의 發生原因 ---------- 8

　　1. 直接的인 原因 ---------- 8

　　2. 間接的인 原因 ---------- 10

第 3 章　韓國의 貿易클레임 現況과 特徵 ---------- 12

　第 1 節　韓國의 貿易클레임 發生現況 ---------- 12

　　1. 年度別클레임 發生現況 ---------- 12

　　2. 原因別클레임 發生現況 ---------- 13

　　3. 品目別클레임 發生現況 ---------- 17

　　4. 地域別클레임 發生現況 ---------- 20

　　5. 金額規模別 클레임 發生現況 ---------- 22

　第 2 節　韓國의 貿易클레임 特徵 ---------- 25

第 3 節　韓·日間의 貿易클레임 比較 ---------- 26
1. 韓·日間 전체 輸出規模에 대한 貿易클레임 比較 --- 26
2. 韓·日間 重化學製品의 貿易클레임 比較 ---------- 29

第 4 章　韓國의 貿易클레임 事例와 問題點 ---------- 32
第 1 節　貿易클레임의 事例 ---------- 32
1. 事例研究 ---------- 32
2. 綜合意見 ---------- 44
第 2 節　貿易클레임의 問題點 ---------- 45

第 5 章　韓國의 貿易클레임 解決을 위한 方案 ---------- 48
第 1 節　貿易클레임의 解決方案 수립과 留意事項 ---------- 48
1. 貿易클레임의 解決方案 수립 ---------- 48
2. 貿易클레임의 處理時 留意事項 ---------- 53
第 2 節　貿易클레임의 解決方案 ---------- 56
1. 當事者間의 友好的 解決方案 ---------- 56
2. 第3者의 介入에 의한 解決方案 ---------- 58
3. 契約의 철저 履行 ---------- 62
4. 制度的 裝置의 利用 ---------- 65

第 6 章　結　　論 ---------- 67
參 考 文 獻

# 表　目　次

〈表 Ⅲ-1〉 年度別클레임 發生現況 ---------- 12
〈表 Ⅲ-2〉 原因別클레임 發生現況 ---------- 15
〈表 Ⅲ-3〉 品目別클레임 現況 ---------- 18
〈表 Ⅲ-4〉 地域別클레임 現況 ---------- 21
〈表 Ⅲ-5〉 金額規模別 클레임 發生現況 ---------- 23
〈表 Ⅲ-6〉 韓·日間 貿易클레임 發生比較 ---------- 27
〈表 Ⅲ-7〉 韓·日間 전체 輸出規模에 대한 貿易클레임 比較 - 29
〈表 Ⅲ-8〉 韓·日間 重化學製品에 대한 貿易클레임 比較 ----- 30

# 그　림　目　次

〈그림 Ⅲ-1〉 原因別클레임 發生年度別 推移 ---------- 16
〈그림 Ⅲ-2〉 品目別클레임 發生年度別 推移 ---------- 19

# 第1章 序 論

## 第1節 硏究의 目的

우리나라는 1960年代 이후 지속적인 輸出主導型 經濟成長政策을 推進해 온 결과 높은 經濟成長率을 나타내었으며 특히 80年代에는 不確實한 國際經濟環境 속에서도 輸出貿易을 主導하여 世界 先進國 대열에 들어서게 되었다. 우리나라의 輸出은 1次産品 이나 輕工業製品 中心에서 1975年代 이후 점차 重化學工業製品으로 輸出構造가 전환됨에 따라서 수출규모가 大型化 되었고 質的인 面에서 高度化와 多樣化 추세를 보였다.

이러한 輸出增大 추세에 따라 貿易클레임도 계속적인 증가를 보였으며 이런 클레임의 發生은 대외 수출시장에서의 信用을 상실케 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수출발전에 저해요인이 되고 있는 것이다.

貿易클레임은 무역거래시 완전하지 못한 요소가 있을때에 發生하는 것으로 에써 벌어들인 귀한 外貨를 다시 되돌려 줄 수 밖에 없는 經濟的 損失을 겪게된다. 따라서 事前에 클레임에 대한 충분한 지식을 습득하여 豫防對策을 강구한다면 貿易클레임의 發生을 최소화 시키고 피치못할 클레임의 발생에 대해서 最善의 解決方法을 모색할수 있을 것이다.

本稿에서는 증가하고 있는 韓國의 貿易클레임의 實態를 살펴보고 日本과 比較分析해 봄으로써 우리나라 貿易클레임의 事例와 問題點을 提示하여 그 豫防對策과 制度的인 裝置를 어떻게 할것인가를 模索해 보는데에 硏究의 目的을 두었다.

## 第2節 研究의 方法과 範圍

本稿에서는 우리나라 貿易클레임 現況을 大韓商事仲裁院에 接受 處理된 貿易클레임 統計를 中心으로 分析하였으며 資料分析方法과 文獻研究方法을 併用하였다.

本稿는 모두 6個의 章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第1章에 이어 第2章에서는 貿易클레임의 形態와 發生原因에 대해 說明했으며,第3章에서는 우리나라 貿易클레임의 現況과 特徵에서 日本과의 클레임 현황을 비교하였으며, 第4章에서는 우리나라의 貿易클레임의 問題點과 防止對策에 대해서 논하였으며 第5章에서는 效率的解決을 위한 制度的裝置에 대해서 살펴 보았으며 第6章에서는 要約과 結論으로 마무리 하였다.

# 第2章 貿易클레임의 形態와 發生原因

## 第1節 貿易클레임의 意義와 類型

### 1. 貿易클레임의 意義

貿易實務에서 使用하는 클레임(Claim)에는 두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運送中의 事故에 대한 클레임(Claim on Damage or Lost carge)이고 다른 하나는 貿易去來上의 契約違反行爲에 관한 賣買當事者 사이에서 일어 나는 클레임(Business Claim, Claim for Trade Dispute)이다.

前者는 運送中의 事故에 의하여 貨物에 損害가 發生 하였을경우 被害者가 船舶會社 또는 保險會社에 損害賠償을 請求하는 것을 말하며 後者는 賣買當事者의 一方이 賣買契約의 內容대로 履行을 하지 않았을때에 그로 인한 損害를 相對方에 請求하는 것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클레임이라 할때는 이 商事紛爭의 求償(Claim for Trade Dispute)을 意味하며 이를 貿易클레임(Business Claim)이라고 부른다.1)

貿易클레임을 廣義로 해석하면 단순한 불평이나 불만의 표시까지도 클레임의 범주에 포함될수 있으나 지배적인 理論은 賣買契約 當事者중 어느 한쪽의 契約不履行 또는 違反에 대하여 그 상대방에서 提起되는 契約의 解除, 引渡 또는 引受의 拒絶, 價格引下, 損害賠償의 要求 또는 貿易契約을 締結한 當事者중 피해를 입은 어느 한쪽이 契約을 위반한 다른 當事者

---

1) 律田昇, 貿易 クレノムの 研究(上), 通商産業調査會, 昭和 44, p.2 ; 姜二秀, 貿易클레임론, 三英社, 1984, p.16.

를 상대로 하여 자기의 權利回復이나 損害賠償을 請求하는 것이라고하여 단순한 불평이나 불만은 클레임의 범주에서 제외하고 있다.2)

따라서 클레임의 뜻은 The act of claiming, a demand for something that one thinks one has a right to , right to demand 로서 自己의 權利를 要求한다3)는 것이다. 이러한 貿易用語로서의 클레임은 상당히 많은 意味로 사용되고 있으나 一般的으로 求償 또는 損害賠償請求라는 意味를 가지고 있다.

## 2. 貿易클레임의 類型

### 가. 品質에 관한 클레임

品質에 관한 클레임은 貿易클레임 중 중심적인 것이며 또한 그 件數에 있어서도 가장 많은것으로서 그 내용도 다양하여 品質不良, 品質相違, 不正品質, 規格相違, 等級低下, 不良品 混入, 品質上違品 混入, 색깔相違, 變質, 變色, 치수相違, 損傷 등 去來商品의 종류에 따라 실로 여러가지로 나누어 지고 있다.4)

貿易契約時에는 견본을 교환하여 契約書에도 "As per sample"과 같은 단서를 삽입하여 계약을 실시하나 대량 생산을 하다보면 똑같은 원료도 구할 수 있고, 또 運送 도중에 퇴색,變質 및 破損되는 경우도 있으며, 또 수입업자의 단순한 주관적인 판단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으로 品質不良이 클레임 發生중 가장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貿易에서 빈번히 일어나고 또 제일 解決하기 까다로운 클레임이다.

---

2) 金安植, 貿易實務論, 博英社, 1985, p.429.
3) 吳世昌, 貿易實務論, 博英社, 1985, p.699 ~ 700.
4) 金容福, 貿易實務論, 博英社, 1985, p.464.

나. 數量에 관한 클레임

商品의 수량에는 무역상으로 보면 確定數量, 條件附數量, 계산數量, 包括數量등 4가지로 나누어지며 契約된商品의 數量이 적게 船積된 경우(short shipment)와 많게 선적(over shipment)하는 경우에는 "過不足許容 文句"(more or less clause)를 契約書나 信用狀上에 기재하는 경우 상품단위는 매우 적으나 그 총수량이 워낙 많은 것들은 ±5% 정도의 수량차이는 인정 받을수도 있으며, 또 契約書나 信用狀上에 about, circa의 표시를 하면 ±10%의 증감은 許容되며, 또 이러한 明示가 없으면 ±5%의 오차는 인정된다.5)

數量에 관한 클레임으로는 흔히 着荷不足, 引渡量의不足, 重量不足, 揚陸量不足, 荷役中, 航海中, 또는 中間港에서의 竊盜와 拔貨, 數量增減 許容의 違反 등이다.6)

다. 包裝에 관한 클레임

國際貿易에서는 商品의 장거리 輸送이 반드시 뒤따르기 때문에 防水되고 堅固한 資材로 商品을 包裝하여야 한다.

또한, 우리나라의 경우 政府의 檢査는 品質檢査외에도 包裝條件에 관하여 特別한 檢査를 받지 않고는 品質의 唯持가 困難하다고 認定되는 견직

---

5) 信用狀統一規則, 第43條 a項, b項.
   a) 信用狀에 明示된 신용장 금액, 수량 또는 單價와 관련하여 사용된 "about" "circa" 또는 유사한 표현은 언급된 금액, 數量 또는 단가를 각각 10%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過不足을 許容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b) 信用狀에 明記된 상품이 초과 또는 부족 되어서는 안된다고 規定하고 있지않은 경우에는 언제나 어음 발행금액이 신용장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한, 분할선적이 금지되어 있어도 5% 이하의 과부족은 許容된다.그러나 信用狀이 수량을 포장단위 또는 개개 품목의 個數를 明示할 경우에는 이러한 편차는 적용되지 않는다.
6) 姜二秀, 前提書, p.32.

물, 면사, 포플린 등을 輸出檢査法 제7조에 의거하여 包裝 檢査를 받도록 하고 있는것 등을 보아도 包裝이 輸出에서 차지하는 比重은 대단히 크다.

包裝에 관한 클레임으로는 不良包裝, 包裝缺陷 등을 들수 있다.7)

라. 船積에 관한 클레임

船積에 관계된 클레임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중에는 故意的으로 행하는 경우도 종종 發生하고 있다. 船積클레임을 크게 나누면 時期的으론 船積을 지연시킨 船積遲延과 船積不履行이 있으며 그밖에도 不良積載, 船積不足, 船積相違, 過剩船積 등이 있다.

여기서 제일 많이 發生되는 것중에 하나인 船積遲延을 살펴보면,이것은 契約上이나 信用狀上에 明示된 船積日 내에 船積을 하지 못하고 遲延되어 明示된 船積日이 經過한후에 船積된 것에 대한 클레임인데 商品에 따라서 클레임의 정도가 다르며, 또하나 船積不履行으로 發生되는 것은 대개 契約 당시보다 商品의 시세가 올랐거나, 또 원자재의 價格이 暴落하여 채산이 맞지않을 경우에 야기되며 이는 클레임 당할것을 예측하고 故意的으로 하는 行爲이다.

마. 運送에 관한 클레임

商品의 運送 도중에 발생하는 하자에 대한 클레임은 運送방법이 다양하고 거기에 미치는 영향이 많은 만큼 많은 양이 발생하고 있다.

수만가지의 상품이 수만척의 다양한 船舶에 의해 수만 항구에서 항구(Port to Port)로 運送되는 가운데 여러가지 환경에 영향을 받게 되는데 특히 자연조건, 풍랑, 기온의 변화가 商品에 상당한 피해를 주는 경우가 많으며, 運送中 발생되는 클레임에는 누손(Leakage), 증발(Evaporation)

---

7) 朴大衛, 貿易實務, 法文社, 1965, p.618.

혼합(Mixture), 기름(Contact with oil), 빗물 및 담수의 위험, 땀과 열의 위험, 곰팡이(Mould, Mildew)등이 있으며, 이것 외에도 投荷가 있으며 실로 다양하다.

바. 決濟에 관한 클레임

대개의 貿易去來에서는 信用狀으로 代金決濟를 하고 있는데 信用狀統一規則 第4條에 의하면 信用狀은 서류에 의한 去來라고 명시되어 있다.

그러므로 商品에 대한 클레임 외에도 선적 서류상에 조그만 문제가 발견 되어도 그것을 트집잡아 貨金決濟를 해주지 않으며, 이런 決濟上의 클레임중에서 많이 發生되는 것으로는 代金不支給, 어음割引拒否, 超過支給金의 不精算, 運送上의 過誤, 不正送狀 등이 있다.

사. 保險에 관한 클레임

保險에 관한 클레임에는 附保怠慢이 있는데 여기에서 클레임이 提起되는 경우는 賣買契約상의 附保範圍에 관한 합의가 불충분 하거나, 賣渡人이 契約上 정해진 附保條件 대로 附保하지 않았을때 등이며, 또하나는 戰時 保險料가 있는데, 이것은 평상시에는 低率이지만 局地的인 戰爭 또는 유사한 紛爭이 갑자기 발생되면 이 保險料率은 폭등하게 되는데 이경우에 폭등된 保險料는"buyer's a/c"로 한다고 契約書에 명기되어있지 않더라도 보통 國際慣習上 買受人의 부담으로 해석되고 있다.

그러나 契約書에 명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當事者간에 이것을 누가 부담할 것인가에 대해 紛爭이발생되는 경우도 있다.8)

아. 市場클레임

市場클레임이란 買受人이 契約 당시에 비해서 해당 상품의 價格의 폭

---

8) 姜二秀, 前揭書, p.37.

락으로 商品을 판매할수 없을때, 여러가지 이유를 들어 契約商品의 인수를 거부하는 행위로 악질 수입업자들이 제일 많이 사용하는 수법이다.

아무리 見本과 일치하는 훌륭한 商品을 船積해도 市況이 불리하면 무슨 트집을 잡아서라도 클레임을 提起하므로 市況이 "Bear market"일때와 "Bull market"9)일때를 잘 판단하여 "Bear market"으로 접어들때는 특히 주의하여야 한다.

## 제2절 貿易클레임의 發生原因

### 1. 直接的 原因

가. 相談에 의한 原因

相談이 세부적으로 진행될때 그중 가장 중요한 交涉은 이른바 請約과 承諾으로서 交言解釋上의 相異, 承諾時期의 錯誤, 相談時의 過失, 不注意에 基因하여 紛爭이 야기되는 경우도있으나 특히 相談의 중추적 交涉에서 일어나는 경우가 많다. 예를들면 firm offer는 "賣却하겠다" 또는 "買入하겠다"라는 賣渡人 또는 買受人의 확정적인 意思標示인데 반하여 條件附 offer는 그 意思가 불확정적 이거나 또는 條件附로서 훗날 契約이 유효하게 성립되었는가의 여부에 대하여 當事者間에 다툼이 생기기 쉬우므로 클레임의 原因이 되는 경우도 많다.

또한 相談을 하여 合意된 內容에 대해서는 必需的으로 기재해야 하며 必需 記載사항은 品名(Description), 數量(Quantity), 價格(Price), 船積

9) Bear market 는 불황일때, 호황일때는 "Bull market" 이라함.

기간(Time of Shipment), 보험조건(Insurance)등은 필히 기록하여야 하며 상담시 발생하는 클레임은 過失, 誤解, 不注意 등에 기하여 많이 발생하므로 상담시 注意를 요한다.

나. 契約에 의한 原因

相談을 실시한 후에는 合意된 사항에 대해서 契約을 하게되며 본래 契約은 當事者間의 口頭에 의한 합의만 있더라도 法律上으로는 유효하게 成立이 되나 그것 만으로써는 불완전한 경우가 많으므로 後日의 입증을 위하여 契約書를 作成,署名하여 서로 교환해두는 것이 일반적인 상관습이다.

契約을 締結할 때에는 그 주요조건에 대해 명백한 合意를 보아야 하며 契約書上의 品目,品質, 數量, 價格, 船積期間,保險條件, 包裝方法(Packing Methods), 決濟條件(Payment Terms), 信用狀條件(Conditions and Terms of L/C), 檢査에 대한 進行과 方法(Inspection Procedures and Method) 不可抗力條件(Act of God), 仲裁條項(Arbitration Clause), 特別條件(Special Condition) 에 관한 정확한 표시와 조건이 표시되어야 한다.

다. 契約의 履行에 있어서의 原因

契約이 완료되면 兩 當事者間에는 權利와 義務가 생기는데 만약 이들이 權利나 義務 가운데 이상이 생기면 클레임이 발생한다.10)

따라서 이들의 信義, 誠實原則 11)에 입각하여 계약당사자인 賣渡人과 買受人이 각 契約의 義務를 誠實하게 履行 하여야하나 貿易契約者 一方이 권리를 濫用한 경우에는 권리의 행사로 인정되지 않고 오히려 違法한 行爲로 損害賠償 責任을 져야 한다.

---

10) 姜二秀, 前提書, p.23.
11) 信義, 誠實의 原則은 公·私法의 모든 領域에 걸친 基本原理로서 우리나라 민법 제2조 1항에서도 私法의 기본 원리로 채택하고 있으며, 무역거래에서도 최고의 법적 규범으로 적용된다.

## 2. 間接的 原因

### 가. 言語의 相異

言語의 相異는 國內外를 막론하고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의 통신거래상의 불편을 가져오고 있으며 貿易에서 쓰이는 言語의 불편은 이루 말할수 없이 크며, 言語가 貿易에서 클레임으로 작용하는 예는 허다하나 주로 語의 해석이 상이한 것이 가장 대표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국제 무역 통신문과 契約書 작성자의 모든 언어는 各各 사물을 관찰하거나 經驗을 서술하는데 各者의 특정한 方法과 形式을 가지고 있음을 理解하고 있어야 한다.12)

### 나. 各國의 商慣習 및 法律의 差異

國際商業會議所(ICC)에서는 1936년 1월에 貿易條件委員會(Trade Terms Committee)의 조사를 토대로 貿易條件의 해택에 관한 國際規則(International Rule for the Interpretation of Trade Terms : INCOTERMS,1936)을 國際商業會議所 이사회가 정식 채택하였다. 이후 4회에 걸쳐서 貿易實務와 일치하는 一定의 최신 규칙을 제공하기 위하여 改正하고 추가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國際貿易에 적용될 통일된 法規는 탄생되지 않고 있으며 UN의 統一法이 탄생될때 까지는 相異한 法律의 숲을 헤치며 다양한 商慣習을 익히고 적용하지 않으면 안되며 특히 貿易은 새로운 환경의 변화에 따라 形態를 달리하기 때문에 法律로는 그 복잡하고 進步的인 商事現象을 규제할수 없고 새로운 商慣習이 發生한다.

이러한 商慣習은 유사한것이 많고 그 내용도 相衝되는것이 있어 紛爭의

---

12) 張到順, 國際비지니스 커뮤니케이션論, 형설출판사, 1986, p.63.

여지가 많으며, 또한 商慣習은 慣行일 뿐으로 국제적 강행법규는 아니기 때문에 그 慣行의 일부도 당사자간의 이견으로 클레임의 해결을 어렵게 한다.13)

다. 電信에 의한 通信

商去來는 書信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으나 급한 경우에는 電信의 왕복만으로써 契約이 체결되는 경우도 많다.

書信料金에 비해 電信料金이 훨씬 비싸기 때문에 되도록 電信文을 간략히 함으로써 電信料를 절약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나 電信料를 절절약하기 위하여 語數를 간략히 하였기 때문에 firm offer중의 중요한 조건의 일부를 빠뜨리거나 後日의 協定에 맡겼기 때문에 契約의 締結時 또는 履行時에 문제가 생겨 클레임의 원인이 되는 경우가 극히 많다.

라. 運送中의 危險

外國貿易은 원거리일 뿐만아니라 위험이 많은 海上運送(Ocean Transportation)에 의하기 때문에 航海中에 事故가 발생할 기회가 많으므로 運送중의 위험은 대부분 海上保險에 의해 커버된다. 14)

마. 信用調査의 困難

국내 상거래에 있어서의 상대방에 대한 信用調査는 비교적 쉽지만 國外의 상대방에 대한 신용조사는 그렇게 쉬운일이 아니다. 즉 항상 변동하는 상대방의 信用狀態 및 金融狀態에 관한 정확하고도 신속한 情報를 입수하기가 곤란하므로, 信用調査의 불충분으로 인하여 성실치 못한 상대방과 去來를 개시하게 되고 그결과 係爭問題가 생기는 수가 많다. 15)

---

13) 鄭貴人, 무역 클레임론, 三英社, 1984, p.20.
14) 姜二秀, 前提書, p.20.
15) 大韓商事仲裁院, (仲裁) 114호.

# 第3章 韓國의 貿易클레임 現況과 特徵

## 第1節 韓國의 貿易클레임 發生現況

### 1. 年度別클레임 發生現況

<表 Ⅲ-1> 年度別클레임 發生現況

(단위 : US 100만$)

| 구분 / 년도 | 수출액(A) 金額 | 수출액(A) 증가율(%) | 클레임(B) 증가율(%) 건수 | 클레임(B) 증가율(%) 금액 | 對比(B/A) % |
|---|---|---|---|---|---|
| 1978 | 12,711 | 27.0 | 60.0 | 181.0 | 0.16 |
| 1979 | 15,056 | 18.0 | 22.0 | 71.0 | 0.24 |
| 1980 | 17,505 | 16.3 | 21.0 | 38.0 | 0.13 |
| 1981 | 20,993 | 21.4 | 2.0 | 114.0 | 0.22 |
| 1982 | 21,613 | 1.7 | 1.7 | 31.4 | 0.29 |
| 1983 | 24,223 | 12.1 | 1.1 | 72.1 | 0.07 |
| 1984 | 29,243 | 20.7 | 16.5 | 8.2 | 0.06 |
| 1985 | 30,283 | 3.6 | 13.2 | 194.7 | 0.12 |
| 1986 | 34,708 | 4.7 | 2.4 | 43.6 | 0.06 |
| 1987 | 47,281 | 36.2 | 10.8 | 55.3 | 0.07 |
| 1988 | 60,696 | 28.2 | 5.2 | 23.9 | 0.04 |

資料 : 大韓商事仲裁院, "仲裁" Vol. 212, 1989. 9.

表 <Ⅲ-1>을 보면 클레임이 수출에서 차지하는 比率은 아직 미미하지만 輸出增大에 따라 그 件數나 金額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輸出은 政府의 輸出 드라이브 정책에 힘입어 지난 11년간(1978~1988)의 기간중에 年平均 17.3%의 增加率을 우리나라 輸出商品에 대한 클레임은 年平均 件數가 7.3% 金額선 13.3%의 增加率을 보이고 있다.

먼저 增加率에 따른 클레임을 분석하여 보면 1984년도의 경우 16.5%, 1986년도의 경우에 2.4%,1988년도에 5.2%로 1986년도의 경우 1984년 보다 18.9%가 감소하여 비교적 바람직한 現象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으나 다만 우려되는 점은 金額面에서 우리 經濟規模가 커짐에 따라 나타난 現象인지는 모르겠으나 클레임 액수가 연평균 13.3% 정도로 커지는 부정적 요소를 발견할수 있다.

우리나라의 수출이 300억불 선을 통과했었던 1985년도에는 클레임 件數가 前年 對比 13.2% 감소 했으나 金額은 194.7% 증가 했으며 1987년에는 前年 對比 件數가 10.8% 금액은 55.3% 增加率을 나타냈다. 동시에 年度別 클레임발생 추세를 살펴보면 1985년도를 기점으로 클레임 비중이 감소하기 시작하여 1988년도에는 클레임액이 전체 輸出額의 0.04%를 차지하여 輸出額 자체로서는 매년 증가추세를 나타냈다. 이러한 현상은 1980년대에 와서 重化學製品 관련 클레임의 건당금액이 대형화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

## 2. 原因別클레임 發生現況

우리나라 輸出商品에 대한 클레임의 大宗은 契約 및 船積不履行과 品質不良에서 나타나고 있다.

〈表 Ⅲ-2〉에 의하면 契約不履行은 件數와 金額面에서 1981년이후 계속 증가추세를 보이면서 1981~1988년의 年平均 전체클레임의 30%이상이라는 가장 높은 比重을 차지하고있어 계약의 성실성이 요구된다. 즉 이를 件數別과 金額別로 살펴보면, 먼저 件數別 現況에서 1981년도엔 35% 1983년도엔 31.9% 1986년도엔 31.3% 1988년도엔 39.5%로 1986년의 경우엔 1983년에 비하여 0.03%가 減少하였으나 1988년도의 경우엔 86년도에 비하여 8.2%가 더욱 增加하고 1984년도에 비하여는 8.8%가 증가 다소 둔화된 현상으로 보이나 金額面에선 1984년 49.2%, 1986년 40%, 1988년에 53.7%로 나타나 1986년의 경우엔 84년보다 9.2%로 減少 비교적 여건이 나아진 진듯이 보였으나 1988년의 경우엔 86년보다 13.7%나 增加되고 84년에 비하여 4.5%가 增加된 점에서 볼때 1984년도 이전의 契約 不履行에 의한 件數가 높은것으로 나타났고 84년 ~ 86년사이에는 비교적 양호한 상태로 증가하여 增加率이 둔화된듯 하였으나 1988년에 이르러선 다시 증가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우리나라 1次産品에서 重化學 工業製品으로 이동에 따른 클레임의 대형화로 풀이할수 있으며 아울러 重化學製品등 거래 단위당 금액이 큰 去來일수록 品質 不良보다는 契約 違反 클레임이 많다고할 수 있으며 契約不履行에는 履行不能, 履行遲延, 不完全 履行, 履行拒絶이 있다.

다음으로 品質不良에 의한 클레임을 분석하여 보면 契約 不履行에 의한 클레임 보다 낮은 수준이다. 〈表 Ⅲ-2〉에 나타난 것처럼 件數面에선 1984년을 기준으로 그전에 높은 추세로 나타났으나 84년이후 86년, 88년엔 감소추세 현상으로 바람직한 現象으로 나타났으며 金額面에서도 84년 이전엔 높은 액수였으나 "84년 이후 86년 87년까지 減少 추세로 발전된 후 88년에 29.7%로 증가폭이 근본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더욱 오늘날

〈表 Ⅲ-2〉 **原因別클레임 發生現況**

(단위 : %)

| 年度 | 區分 | 原因別 계약 불이행 | 품질 불량 | 수수료 미불 | 수량 부족 | 선수금 반환 요청 | 포장 불량 | 기타 |
|---|---|---|---|---|---|---|---|---|
| 1981 | 건수 | 35.0 | 28.0 | 15.0 | 4.0 | 2.0 | · | 16.0 |
| | 금액 | 23.0 | 47.0 | 19.0 | 1.0 | · | 1.0 | 9.0 |
| 1982 | 건수 | 30.6 | 30.6 | 13.0 | 3.6 | 1.6 | 0.5 | 20.1 |
| | 금액 | 68.6 | 18.9 | 0.8 | 0.3 | 0.3 | 0.2 | 10.9 |
| 1983 | 건수 | 31.9 | 30.0 | 10.9 | 3.7 | 1.6 | 0.5 | 21.4 |
| | 금액 | 60.1 | 17.5 | 2.1 | 1.6 | 0.5 | 0.3 | 17.9 |
| 1984 | 건수 | 30.7 | 27.5 | 12.3 | 2.1 | 4.4 | 0.6 | 18.4 |
| | 금액 | 49.2 | 25.1 | 3.7 | 2.5 | 1.0 | 0.8 | 17.7 |
| 1985 | 건수 | 27.7 | 27.7 | 10.1 | 8.0 | 2.0 | 1.1 | 23.4 |
| | 금액 | 76.2 | 10.5 | 2.0 | 0.5 | 0.7 | 0.1 | 10.0 |
| 1986 | 건수 | 31.3 | 26.7 | 10.9 | 5.6 | 1.9 | 0.2 | 23.4 |
| | 금액 | 40.0 | 15.7 | 2.5 | 1.0 | 0.3 | 0.1 | 40.4 |
| 1987 | 건수 | 34.3 | 26.6 | 8.7 | 5.2 | 4.9 | 0.3 | 20.0 |
| | 금액 | 48.8 | 10.1 | 0.7 | 0.8 | 3.4 | 0 | 38.4 |
| 1988 | 건수 | 39.5 | 22.6 | 10.0 | 5.7 | 1.9 | 0.3 | 20.1 |
| | 금액 | 53.7 | 29.7 | 1.7 | 1.1 | 0.2 | 0 | 13.6 |

資料 : 大韓商事仲裁院, 仲裁 Vol, 212, 1989. 9

과 같이 國際競爭力이 치열한 貿易環境에선 더욱 品質不良에 의한 클레임은 件數別 額數別 구분없이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課題이다.

그외에 手數料 未決이나 數量不足, 先收金 返還要請, 특히 그동안 問題點의 하나로 곧 잘 지적되던 包裝不良이 84년을 기준으로 많이 줄어든 점에서 비교적 양호한 現象으로 받아들일수 있다.

참고로 1984~1988년 까지의 原因別클레임 發生年度別 推移를 그래프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그림 Ⅲ-1〉 原因別클레임 發生年度別 推移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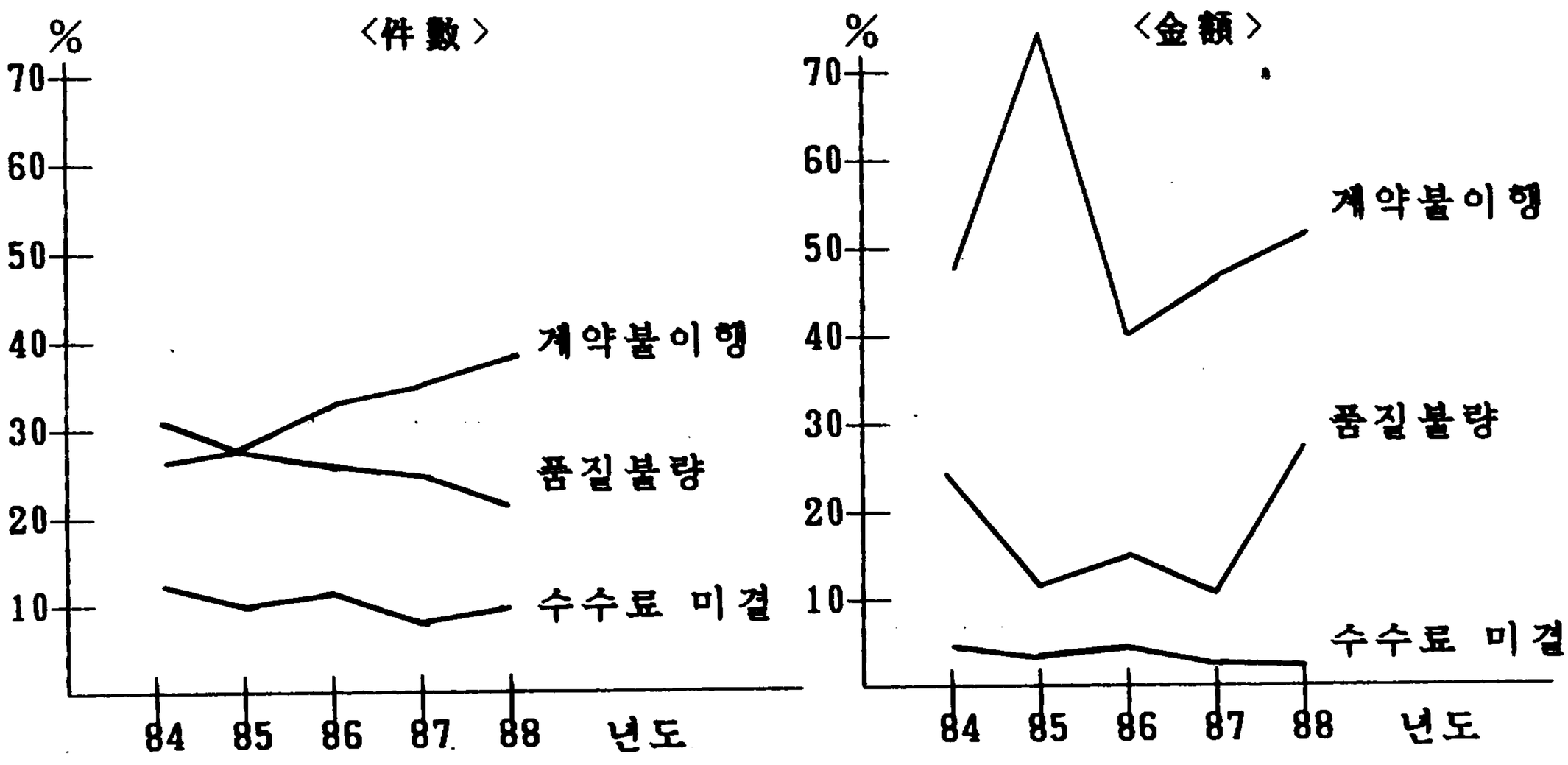


資料 : 大韓商事仲裁院, "仲裁" Vol. 213, 1989. 9.

90년대에 들어서도 클레임에 대한 認識은 전혀 변하지 않고 있으며 42% 이상이 契約書 없이 去來를 하는 등 虛點 투성이 去來를 실시하여 왔다. 91년도와 92년도 클레임 發生을 原因別로 보면 92년도에는 品質不良 27.8%, 船積不履行 및 遲延 20.3%, 數量不足 15.6%, 包裝不良 13.4%,契約違反 7.7%, 기타 15.2% 이며16) 93년도에는 貨金決裁 34.4%, 品質不良

16) 『중소기업』 92, 2, 17 〈3면〉.

19%, A/S 소홀 17%, 船積遲延 12.4%, 物品相異/不足 6.6%,書類瑕疵 2.5% 기타 8.1%의 比率을 보였다.17) 93년도 1/4분기는 92년도 1/4분기에 비해 總件數 11%,금액 25%의 감소현상을 보여 바람직한 現像을 보여주고 있으나 品質不良과 貸金請求가 차지하는 비율은 전체件의 85건으로 57%를 차지 주종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을 볼때 품질불량과 대금청구에 대한 클레임은 심각한 현상이 아닐 수 없다.18)

## 3. 品目別클레임 發生現況

<表 Ⅲ-3>에서 볼수 있듯이 클레임 件數나 金額이 1次産品 내지 輕工業製品에서 重化學製品이 차지하는 比重이 높아지고 있으며 1次産品에 대한 增加추세가 둔화하고 있는 반면 重化學製品에 대한 클레임은 件數나 金額面에서 每年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를 세분하여 보면 一次産品의 경우 건수 측면에서 84년까진 6%의 기준으로 비슷한 比率로 나타났으나 86년 이후 작은 폭이기는 하지만 增加趨勢로 나타나 비교적 부정적 요소가 있었다. 額數面에서는 84년 이전엔 클레임액이 낮게 나타나 비교적 안정세를 보이는 바람직한 現象이 일어났으나 1985, 86, 87년에는 15%이상을 차지하는 增加 現象을 일으킴으로써 一次産品에 대한 對備策이 소홀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보여줬다.

우리제품에서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電氣, 化學, 機械, 重工業 등 重化學製品에 대한 클레임을 살펴보면 件數別에서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으나 金額面에서는 84년에 40.5%, 86년엔 18.9%, 88년엔 61.3%로

---

17) 『동아일보』 93, 2, 2 <2면>.
18) 『내외관세무역신간』 93, 4, 21 <1면>

〈表 Ⅲ-3〉 **品目別클레임 發生現況**

(단위 : %)

| 품목별 / 년도 구분 | | 1차 산업 | 중화학제품 | 직물, 의류 | 잡 화 | 기 타 |
|---|---|---|---|---|---|---|
| 1981 | 건수 | 7.3 | 22.0 | 23.4 | 27.6 | 19.5 |
| | 금액 | 6.5 | 67.7 | 14.0 | 8.8 | 2.9 |
| 1982 | 건수 | 6.7 | 25.9 | 23.4 | 19.7 | 24.3 |
| | 금액 | 4.4 | 22.7 | 4.2 | 13.0 | 55.7 |
| 1983 | 건수 | 6.4 | 23.3 | 26.6 | 22.3 | 21.4 |
| | 금액 | 10.0 | 50.3 | 13.6 | 11.8 | 14.3 |
| 1984 | 건수 | 6.6 | 22.5 | 26.9 | 27.8 | 16.2 |
| | 금액 | 4.6 | 40.5 | 15.8 | 21.5 | 17.6 |
| 1985 | 건수 | 6.3 | 22.5 | 26.1 | 26.4 | 18.7 |
| | 금액 | 23.1 | 21.6 | 7.0 | 6.0 | 42.3 |
| 1986 | 건수 | 8.5 | 19.3 | 28.2 | 26.0 | 18.0 |
| | 금액 | 19.7 | 18.9 | 13.9 | 7.9 | 39.6 |
| 1987 | 건수 | 7.9 | 18.3 | 25.3 | 32.7 | 15.8 |
| | 금액 | 15.4 | 13.1 | 8.7 | 19.2 | 43.6 |
| 1988 | 건수 | 5.4 | 22.5 | 23.4 | 30.9 | 17.8 |
| | 금액 | 9.2 | 61.3 | 13.3 | 9.1 | 7.1 |

資料 : 大韓商事仲裁院, 仲裁 Vol, 213, 1989. 10.

86년의 경우엔 84년에비해 31.6%나 減少되어 肯定的 側面을 보이기도 하였으나 88년에는 86년에 비하여 42.4%가 增加를 보임으로써 기업 및 國家

의 수익상의 문제 뿐만아니라 製品의 이미지에도 否定的 要素가 클것으로 이해되어 이에대한 대책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로 1984~1988년 까지 발생한 品目別 클레임 發生現況을 그래프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그림 Ⅲ-2〉 品目別클레임 發生年度別 推移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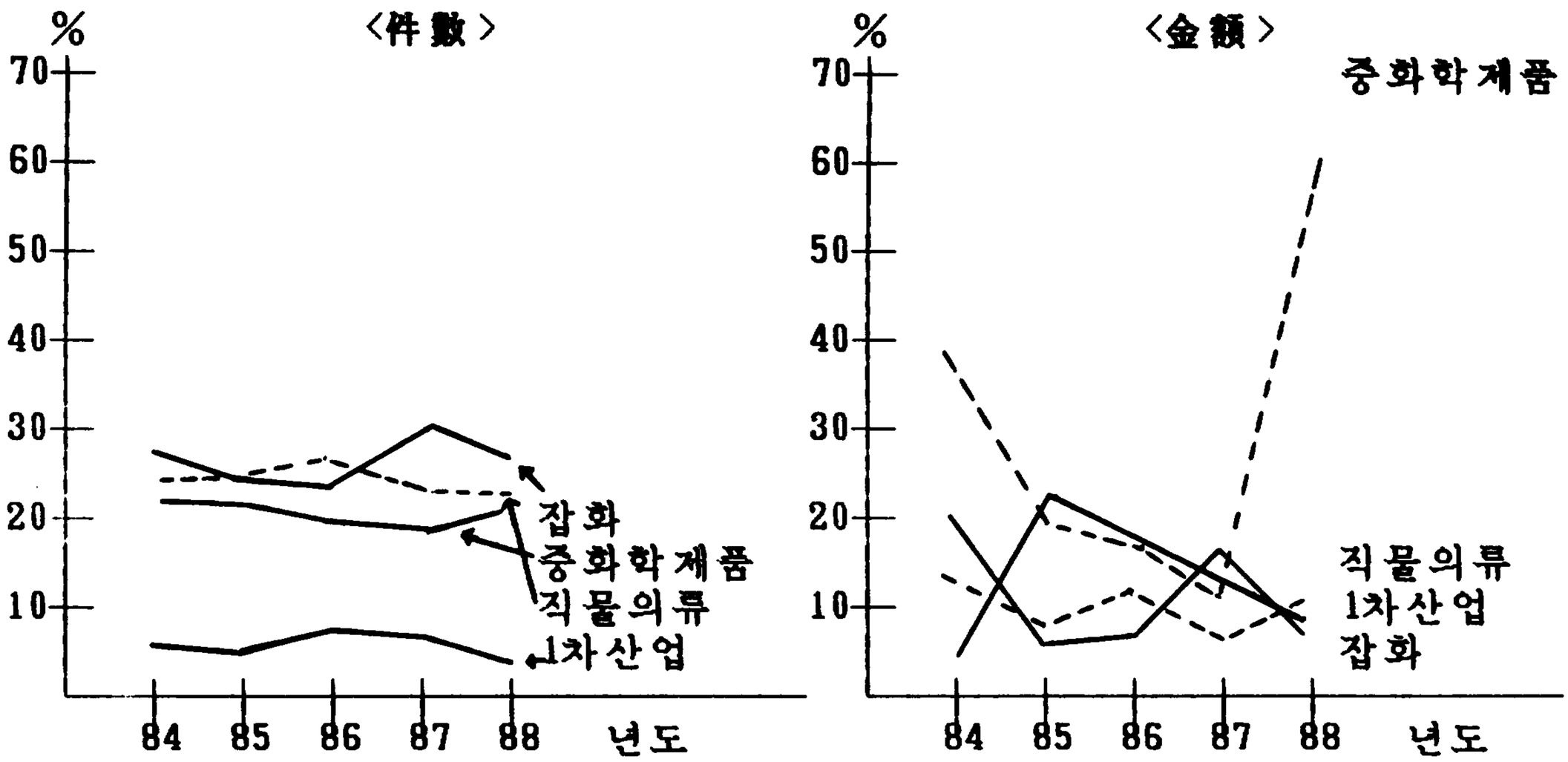


註 ; 1차산품 : 농산물, 수산물, 광산물 포함

중화학 제품 : 전기, 화학, 기계, 중공업제품 포함

資料 : 大韓商事仲裁院, 仲裁 Vol. 213, 1989. 10

91年度와 92年度의 貿易클레임의 發生品目을 살펴보면 91年度에는 직물이 18.8%로 가장 문제가 많았으며 衣類가 18.1%, 電氣·電子가 13.3%, 機械·金屬製品이 12%의 比率을 보였으며 92年度에는 纖維類가 155件으로 전체의 25%를 차지 貿易클레임의 주종을 차지하였으며 플라스틱,고무가죽 제품, 기계류 및 운반용기계의 클레임의 주종을 차지하였으며 플라스틱,

고무 가죽제품, 기계류 및 운반용기계의 클레임 件數는 前年 대비 각각 77%, 29%, 12%로 증가한 반면 電氣·電子製品, 生活用品類 등은 감소했다.19) 93年度 1/4分期 클레임통계에 따르면 繊維類 142件, 用役關聯請求 28건, 生活用品類 23件으로서 전체 클레임의 63%를 점유하여 주종을 이루었으며 92年 1/4分期와 비교할때 鐵鋼 및 金屬製品, 用役關聯請求, 生活用品類는 각각 38%, 47%, 53%로 증가한 반면 기타품목의 클레임청구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20) 이러한 현상은 1/4分期에 감소되었다하여 좋아할 것이 아니라 클레임 발생에 근본적인 原因을 색출하여 제거하여 나가야 할 것이다.

## 4. 地域別 클레임 發生現況

우리나라의 수출환경도 다양화되어 동구권등 각 지역으로 擴散되고 있으나 아직도 일부지역 즉 北美, 日本, 아세아등에 지나치게 집중되어 있는 점에서 全世界로의 다각화가 계속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자연 地域別 클레임의 集中化 現象도 일부 國家의 偏重現象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表Ⅲ-4>에서 보는바와 같이 아세아가 件數,金額面에서 타지역에 비하여 가장높게 나타났다. 다음 北美, 유럽 순으로 나타났는데 우선 먼저 아세아의 년도별 差를 分析하여 보면 件數面에서보면 84년 以前까지는 낮은비율로 나타났으나 84년 이후 45%이상을 넘어 유럽과 북미지역의 減少趨勢 現象과는 대조적이다. 또한 金額面에서도 85년 이후 적어도 10%이상 30%이하의 높은 比率의 클레임이 나타나 아세아지역

19) 『한국일보』 92, 2, 8 <9면>.
20) 『내외관세무역신간』 93, 4, 21 <1면>.

〈表 Ⅲ-4〉 **地域別클레임 發生現況**

(단위 : %)

| 년도 | 구분 | 북 미 | 남미 | 유 럽 | 大洋州 | 아세아 | 중동 | 아프리카 |
|---|---|---|---|---|---|---|---|---|
| 1981 | 건수 | 19.9 | 4.2 | 17.7 | 4.6 | 41.9 | 10.3 | 1.2 |
| | 금액 | 58.2 | 0.6 | 3.9 | 2.0 | 25.3 | 9.8 | 0.2 |
| 1982 | 건수 | 18.1 | 5.3 | 16.8 | 2.9 | 42.8 | 10.5 | 3.6 |
| | 금액 | 14.3 | 1.0 | 3.1 | 1.4 | 76.7 | 3.4 | 0.1 |
| 1983 | 건수 | 15.2 | 2.1 | 21.8 | 3.5 | 40.4 | 12.5 | 3.7 |
| | 금액 | 13.4 | 0.5 | 7.7 | 5.4 | 41.7 | 29.8 | 1.5 |
| 1984 | 건수 | 18.1 | 2.0 | 17.0 | 2.7 | 45.7 | 9.9 | 4.6 |
| | 금액 | 25.6 | 0.7 | 10.0 | 1.6 | 34.4 | 21.1 | 6.6 |
| 1985 | 건수 | 14.7 | 2.9 | 13.2 | 5.6 | 48.7 | 10.9 | 4.0 |
| | 금액 | 21.6 | 0 | 2.8 | 1.9 | 68.0 | 4.8 | 0.9 |
| 1986 | 건수 | 19.6 | 2.0 | 12.1 | 3.9 | 49.5 | 8.3 | 4.6 |
| | 금액 | 16.8 | 0.5 | 6.1 | 1.5 | 67.1 | 6.9 | 1.1 |
| 1987 | 건수 | 19.6 | 3.5 | 13.5 | 3.4 | 49.0 | 8.0 | 3.0 |
| | 금액 | 35.7 | 0.7 | 8.1 | 0.4 | 51.7 | 1.9 | 1.5 |
| 1988 | 건수 | 17.2 | 8.9 | 13.4 | 5.9 | 43.8 | 6.8 | 4.0 |
| | 금액 | 6.0 | 2.7 | 7.6 | 0.5 | 77.2 | 2.1 | 3.9 |

資料 : 大韓商事仲裁院, 仲裁 Vol, 212, 1989. 10.

의 製品클레임에 대한 대비책이 먼저 제기되어야 한다고 본다.북미지역의 件數와 클레임을 살펴보면 件數面에서 84년을 기준으로 그 以前以後 별차

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金額面에서 84년 이전엔 비교적 낮았으나 84년이후 높은 추세로 적어도 10%이상 20%이하까지 높은 비율로 증가한 것을 볼수있다.

유럽의 경우는 84년 이후 꾸준히 감소하고 있었으나 1988年에는 86年보다 1.5% 증가하였다.

따라서 <表 Ⅲ-4>에서 나타난 바와같이 이 3지역이 차지한 비중이 가장 높아 이에 대한 개선책이 요구된다.

또한 91年度에는 日本이 가장 많아 17.1%를 차지했고 美國이 15.5%로 2위 홍콩이 9.1%, 英國이 7.7%로 이들 4개나라가 전체의 절반 가량을 차지한 것으로 조사됐으며21) 92年度에는 91年度에 비하여 스위스 50%,인도네시아 50%, 영국 44%, 일본 23%, 캐나다 8%등의 增加추세를 보인 반면 기타지역은 감소했다. 특히 美國과의 貿易클레임이 對內件 46건, 對外件 22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金額으로 볼때 日本이 5백46만 달러로 가장 큰것으로 나타나22) 美國과 日本에 대한 貿易클레임 豫防對策이 시급히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 5. 金額規模別 클레임 發生現況

金額規模別클레임 發生現況에서도 우리는 유의할 점을 찾게되는데 가령 우리산업이 初期段階에서 벗어나 産業規模, 金額, 商品의 質, 製品이 다양성있게 出荷되고 있는 점에서 산업발전 측면에서 바람직 하겠으나 클레임 금액에서는 少額低,高額高 라는 클레임 액수가 커지고 있다는 사실을

---

21) 『중앙경제신간』 92, 2, 8 <6면>.
22) 『일간무역』 93, 1, 16 <1면>.

〈表 Ⅲ-5〉 **金額規模別 클레임 發生現況**

(단위 : $, %)

| 년도 | 구분 | 5천 미만 | 5천 ~ 1만 | 1만 ~ 5만 | 5만 ~ 10만 | 10만 ~ 30만 | 30만 ~ 50만 | 50만 ~ 100만 | 100만 이상 |
|---|---|---|---|---|---|---|---|---|---|
| 1981 | 건수 | 48 | 10.9 | 25.8 | 6.6 | 5.7 | 1.8 | 0.2 | 0.9 |
| | 금액 | 0.6 | 0.9 | 8.6 | 5.2 | 9.0 | 8.3 | 1.8 | 65.5 |
| 1982 | 건수 | 48.7 | 11.1 | 24.8 | 7.1 | 4.0 | 2.0 | 0.5 | 1.8 |
| | 금액 | 0.5 | 0.7 | 5.0 | 4.2 | 5.6 | 6.1 | 3.0 | 74.9 |
| 1983 | 건수 | 52.4 | 11.1 | 25.6 | 5.3 | 4.0 | 0.7 | 0.5 | 0.2 |
| | 금액 | 2.2 | 2.5 | 19.4 | 11.8 | 21.1 | 9.6 | 9.0 | 24.4 |
| 1984 | 건수 | 52.5 | 12.9 | 21.5 | 7.1 | 4.2 | 0.5 | 1.1 | 0.2 |
| | 금액 | 1.9 | 3.2 | 16.4 | 15.8 | 23.1 | 5.8 | 26.6 | 7.2 |
| 1985 | 건수 | 53.8 | 14.0 | 20.3 | 5.4 | 4.3 | 0.9 | 0.6 | 0.7 |
| | 금액 | 0.8 | 1.5 | 6.9 | 5.6 | 11.2 | 5.1 | 4.8 | 64.1 |
| 1986 | 건수 | 51.2 | 12.6 | 24.2 | 4.6 | 4.8 | 1.1 | 0.9 | 0.6 |
| | 금액 | 1.6 | 2.3 | 14.1 | 8.2 | 20.5 | 10.7 | 18.7 | 23.9 |
| 1987 | 건수 | 54.4 | 10.2 | 22.8 | 4.9 | 4.4 | 2.0 | 0.8 | 0.5 |
| | 금액 | 1.0 | 1.5 | 9.6 | 6.6 | 12.8 | 12.5 | 12.3 | 43.7 |
| 1988 | 건수 | 58.1 | 9.1 | 21.8 | 4.3 | 5.2 | 0.5 | 0.5 | 0.5 |
| | 금액 | 1.3 | 1.8 | 14.1 | 7.5 | 22.1 | 4.4 | 26.7 | 22.1 |

資料 : 大韓商事仲裁院, 仲裁 Vol, 213, 1989. 10.

발견하게 되는데 이를 구체적으로 보면 〈表 Ⅲ-5〉에 나타난 바와같이 5千弗 이상 1萬弗 미만의 경우 클레임 件數가 줄어들어 1985년의 경우 14%

에서 1988년에는 9.1%로 나타나 少額 클레임의 분포비율이 낮아짐을 볼수 있다.

그러나 高額의 클레임을 보면 發生率에 있어서 件數는 다소 줄어 들었으나 金額面에서는 커지고 있는데 실제로 이를 분석하면 5萬弗이상 10萬弗미만의 클레임은 件數에서 매년 減少現象을 보여 85년도에 5.4%하던것이 4.3%를 기록했으나 金額은 5.6%에서 7.5%로 증가했다. 우리나라의 重化學製品의 輸出에 따른 대형 클레임의 豫防策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동시에 수출규모 증대와 금액의 액수 역시 커지고 있는 점에서 금액의 클레임에 대한 대응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1992年度 1/4分期 외국 수입업체들이 제기한 貿易클레임은 2백18건,1천9백43만3천 달러로 1991年度 같은 기간의 1백97건, 9백73만 달러에 비해 件數는 10.6% 증가 하였으나 金額은 무려 99.7%(9백70만1천달러)나 증가하여 클레임 規模가 대형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3) 92年度의 전체클레임 金額別로는 5만달러 미만건이 4백97건으로 전체 6백25건의 80%를 점유해 주종을 이루었으며 이중 1만달러 미만건은 3백23건의 少額建은 전체클레임의 52%를 차지했다. 增加率에 있어서는 10만달러 이상의 高額클레임의 증가폭이 크게 나타났는데 특히 1백만달러 이상의 高額件은 모두 10건으로 前年에 비해 1백50%의 급증세를 보였다.24)

---

23) 『세계일보』 92, 6, 26 <2면>.
24) 『일간무역』 93, 1, 16 <1면>.
『매일경제신문』 93, 1, 16 <4면>.
『중앙일보』 93, 1, 17 <4면>.

## 第 2 節 韓國의 貿易클레임 特徵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輸出産業 구조가 1차 산업에서 2차 산업으로 전환됨에 따라 우리나라의 輸出商品도 1차 商品내지 輕工業 製品에서 重化學工業 製品으로 옮겨가고 있다. 따라서 클레임의 양상도 다양하게 變貌해 原因面에서 보면 品質不良의 件數가 전체적으로 볼때에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지만 金額面에서 보면 契約不履行클레임이 매년 增加하여 오히려 品質不良보다 더 많은 比率을 차지하고 있으며, 또한 規模面에서도 대형클레임이 늘어나고있는 추세다.

앞으로 우리가 지향해 나가야 할 輸出産業構造는 重化學産業 분야이며 그럴경우 앞의 통계 분야에서 나타난 바와같이 계약상의 瑕疵로 인한 클레임에 대비하여 중점적인 대책수립이 강구되어야 할것이며 또한 品質不良 클레임 중에서도 품질자체 에 瑕疵가 있는 경우도 있지만 契約書上 品質條件 규정이 불명확하기 때문에 발생되는 클레임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근래에 들어 우리나라의 技術水準이 많이 향상되어 있지만 輕工業 製品에서의 품질에 관한 클레임은 고의적인 마아켓 클레임일 가능성이 많이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것들을 豫防하려면 契約締結時 모든 去來 조건들을 명백히 규정해 두는 것이 필요하다.

# 第3節 韓 · 日間의 貿易클레임 比較

## 1. 韓·日間 전체 輸出規模에 대한 貿易클레임 比較

앞에서 敍述한 우리나라의 클레임 發生現況과 實態分析을 토대로 우리나라와 日本의 클레임 실태를 비교해 보면 輸出實績에 비해 클레임 發生額의 비중이 〈 表 Ⅲ-6 〉에 의하면 우리나라가 日本보다 더 작을 뿐만 아니라 클레임 發生率도 훨씬적다. 經濟與件의 差異는 다소 있다 해도 100억$ 輸出實績을 達成한 우리나라의 1977年度와 日本의 1967年度를 比較하면 日本이 클레임의 發生이 더 많다.그러나 日本과 輸出額이 비슷한 1979年度 와 1982年에는 우리나라의 클레임額이 日本을 超過한 경우도 發生했었다.

輸出額에 대한 클레임額의 比重은 日本이 우리보다 4배나 높은 반면에 건당 클레임額은 우리나라가 日本보다 훨씬 높게 나타났다. 이는 우리나라의 貿易業者들이 製品 品質管理나 對外 신용도 면에서 日本보다 뒤떨어진다는 사실로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日本은 1975년 이후 부터 클레임 發生額이 輸出額에서 차지하는 比重이 떨어지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는 정반대 現象을 나타내고 있다. 이와 같은 이유는 輸出製品의 構成이 一次商品 내지 輕工業製品에서 重化學製品으로 變化함에 따라 重化學 工業에 관련된 商品의 件當 클레임額이 大型化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表 Ⅲ - 6 〉참 조

日本의 輸出構造는 우리나라와 달리 重化學製品을 비롯하여 高價品이 많기 때문에 件當 클레임金額은 우리 나라에 비하여 日本이 높아야 할 것

으로 判斷되나 그렇지 않고 오히려 우리나라의 件當 클레임額이 높다는 것은 輸出品 자체에 問題가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表 Ⅲ - 6〉 **韓·日間 貿易클레임 發生比較**

(單位 : US 100萬$)

| 區分 / 年度 | 우리나라 | | | | 日本 | | | |
|---|---|---|---|---|---|---|---|---|
| | 輸出實績 (A) | 클레임 件數 | 클레임 額 (B) | 構成比 (B/A) | 輸出實績 (A) | 클레임 件數 | 클레임額 (B) | 構成比 (B/A) |
| 1967 | 320 | 97 | 0,35 | 0.11 | 10,442 | 11,862 | 29 | 0.281 |
| 1968 | 455 | 103 | 0,41 | 0.09 | 12,972 | 13,701 | 37 | 0.283 |
| 1969 | 622 | 147 | 1,10 | 0.17 | 15,990 | 17,359 | 35 | 0.218 |
| 1970 | 835 | 135 | 1,32 | 0.15 | 19,318 | 18,205 | 44 | 0.228 |
| 1971 | 1,068 | 127 | 2,20 | 0.20 | 24,087 | 17,619 | 55 | 0.227 |
| 1972 | 1,624 | 113 | 1,34 | 0.08 | 28,591 | 14,618 | 81 | 0.283 |
| 1973 | 3,225 | 134 | 1,89 | 0.06 | 36,930 | 11,209 | 74 | 0.200 |
| 1974 | 4,460 | 165 | 2,71 | 0.06 | 55,536 | 12,661 | 81 | 0.146 |
| 1975 | 5,081 | 219 | 10,35 | 0.20 | 55,753 | 16,488 | 136 | 0.243 |
| 1976 | 7,715 | 246 | 6,24 | 0.08 | 67,225 | 17,371 | 119 | 0.177 |
| 1977 | 10,046 | 347 | 7,44 | 0.07 | 80,495 | 15,910 | 123 | 0.152 |
| 1978 | 12,710 | 556 | 20,79 | 0.16 | 97,543 | 5,901 | 126 | 0.129 |
| 1979 | 15,055 | 678 | 35,59 | 0.23 | 103032 | 4,500 | 120 | 0.117 |

資料 : 大韓商事仲裁院 , 仲裁 114 號 . 1981年 7月 .

輸出 100億$ 을 達成한것이 日本은 1967年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1977年으로서 10年의 差異를 보이고 있으며 實質 輸出內容이 같다고는 할 수 없으나 兩國家의 同額의 輸出實績을 比較해보면 우리나라의 1977年度의 클레임은 374件인데 비해 日本의 1967年度 클레임은 11,862件으로 우리나라의 약 30培에 해당한다. 그러나 같은해 클레임 金額面에서는 우리나라가 US $ 744萬이고, 日本은 US $ 2,900萬으로 우리나라의 약 4倍에 불과하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그 要因은 우리나라의 國際클레임에 비하여 숨겨있는 陰性的 클레임이 많음을 나타내고 있다.

1977年 이후 클레임의 趨勢를 보면 우리나라의 클레임의 構成比가 높게 增加하고 있어 輸出額이 높아질수록 件當 클레임額의 增加가 日本을 능가하는 좋지 못한 問題點을 보이고 있다.

韓·日 兩國의 클레임 趨勢를 < 表 Ⅲ -7 >에서 보면 우리나라의 경우 1978年에 클레임 件數에서 前年對備 1.6倍,클레임 金額에서 2.8倍의 增加現象이 나타났다. 反面 日本에서는 클레임 件數에서 1.2倍, 金額에서 1.3倍의 근소한 增加에 그치고 있다.

여기에서 볼수 있듯이 우리나라는 100億$ 輸出達成을 위해 무리한 船積과 輸出品의 品質管理에 소홀했던 것으로 볼수 있다. 前年度 輸出에서 있은 클레임 要因은 보통 다음해에 실제 클레임으로 나타나게 된다.

韓國에서의 클레임 增加現象은 계속되어 클레임 件數에서 79年度에도 77년 對比 2.0倍의 增加가 있었고, 金額에서는 4.8倍의 增加를 보였다.

日本의 경우에는 1968年에도 平均的인 增加水準 이었고, 1969年에는 오히려 金額에서 약간의 減少現象까지 보였다.

이 기간 동안 클레임의 件當金額을 平均할때 韓國은 약 US $ 37,000이며, 日本은 US $ 2,400으로서 韓國이 약 16倍가 높다. 이역시 우리나라 클레임은 輸出額이 높아 질수록 件當 클레임額이 높아짐을 알수 있으며 日本의 경우 클레임의 件數와 金額에서 增加現象은 있었으나 件當 클레임 金額이 非正常的으로 뛰지는 않았으나 우리나라는 同一水準이 아닌 非正常的으로 뛰고 있다.

그러나 우리 나라도 1982年을 고비로 클레임의 件數나 金額에서 현저한

〈表 Ⅲ - 7〉 韓·日間 全體 輸出規模에 대한 貿易클레임 比較

(單位 : US 100萬$)

| 韓 國 | | | | | 日 本 | | | | |
|---|---|---|---|---|---|---|---|---|---|
| 年度 | 輸出實績 | 클레임件數 | 클레임額 | 클레임件當額 | 年度 | 輸出實績 | 클레임件數 | 클레임額 | 클레임件當額 |
| 1977 | 10,046 | 347 | 7.4 | 21.3 | 1967 | 10,442 | 11,862 | 29 | 2.4 |
| 1978 | 12,710 | 556 | 20.8 | 37.4 | 1968 | 12,972 | 13,701 | 37 | 2.7 |
| 1979 | 15,055 | 678 | 35.6 | 52.5 | 1969 | 15,990 | 17,359 | 35 | 2.0 |
| 1980 | 17,505 | 535 | 22.2 | 41.5 | 1970 | 19,318 | 18,205 | 44 | 2.4 |
| 1981 | 20,993 | 543 | 47.5 | 87.5 | 1971 | 24,087 | 17,619 | 55 | 3.1 |
| 1982 | 21,616 | 552 | 62.5 | 113.2 | 1972 | 28,591 | 14,618 | 81 | 5.5 |
| 1983 | 24,223 | 546 | 17.4 | 31.9 | 1973 | 36,930 | 11,209 | 74 | 6.6 |
| 1984 | 29,245 | 636 | 18.9 | 29.7 | 1974 | 55,536 | 11,661 | 81 | 6.4 |

資料 : 1. 大韓商事仲裁院 , 仲裁 114 號 . 1981年 7月 .

2. 大韓商事仲裁院 , 仲裁 198 號 . 1988年 7月 .

減少를 보였고, 이는 韓國의 輸出이 점차 안정화 되고 輸出品 品質管理가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겠다.

## 2. 韓·日間 重化學製品의 貿易클레임 比較

우리나라의 重化學클레임은〈表 Ⅲ - 8 〉에서 볼 수 있듯이 全體클레임 件數에 약17%, 金額에서의 약34%의 比重을 차지하고 있다. 우리에 비하여 일본은 件數에서 약 64%, 金額에서 약 73%를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重化學클레임의 비중을 보이고 있는 것은 우리나라가 아직 重化學製品을 본격적으로 輸出하지 못하고 다만 重化學製品 가운데 安定性 있는 基礎分野 製品이나 組立製品 정도만을 輸出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나 日本과 比較해볼때 重化學 輸出 비중이 높아질수록 클레임 배상율이 높아 진다는 것을 뜻하므로 이에 대한 對策이 講究되어야 할것이다.

우리나라가 本格的으로 重化學製品을 輸出하게 되는 段階에서는 日本以上으로 클레임이 發生할 것으로 豫想되므로 이에대한 對策을 세워야 하며 우리나라의 클레임 金額이낮다 하더라도 件當 클레임 金額은 日本보다 8倍 이상이나 많다는 事實은 높은 金額의 클레임에다 件數가 많아지면 이는 國際 競爭力 向上에 障碍要因으로 登場할 것이다.

〈表 Ⅲ - 8〉 韓·日間 重化學製品에 대한 貿易클레임 比較

(單位 : US 100萬$)

| 區分 / 年度 | 한국 | | | | 일본 | | | |
|---|---|---|---|---|---|---|---|---|
| | 件數 | 構成比 (%) | 金額 | 構成比 (%) | 件數 | 構成比 (%) | 金額 | 構成比 (%) |
| 1970 | 13 | 9.6 | 531 | 40.3 | 10,173 | 55.9 | 29,715 | 67.5 |
| 1971 | 8 | 6.3 | 361 | 16.4 | 9,548 | 54.2 | 37,203 | 67.9 |
| 1972 | 19 | 16.8 | 140 | 10.4 | 8,209 | 56.2 | 53,680 | 66.2 |
| 1973 | 14 | 10.4 | 182 | 9.6 | 6,625 | 59.5 | 50,760 | 68.3 |
| 1974 | 21 | 12.7 | 943 | 34.8 | 8,250 | 65.2 | 56,619 | 69.9 |
| 1975 | 30 | 13.7 | 6,662 | 64.4 | 11,422 | 69.3 | 99,828 | 73.6 |
| 1976 | 54 | 22.0 | 1,842 | 29.5 | 12,482 | 71.9 | 87,542 | 73.4 |
| 1977 | 109 | 26.8 | 2,327 | 32.4 | 11,575 | 72.8 | 95,441 | 77.4 |
| 1978 | 145 | 20.3 | 6,925 | 47.2 | 3.808 | 64.5 | 107557 | 85.3 |
| 1979 | 203 | 29.9 | 19,516 | 54.8 | 2,965 | 65.9 | 98,799 | 82.2 |

資料:鄭貴人.韓國商事仲裁制度의 效率的運營을 위한 硏究(1986년)p.165.

이상과 같이 韓·日間의 貿易클레임에 대하여 比較하여 본 바와같이 우리나라에 貿易클레임은 件數當 金額面에서 日本에 비해 커다란 차이를 가져오고 있으며 이를 조속히 解決하기 위해서는 品質向上과 새로운 製品의 開發을 실시해야 하며 政府에서는 日本政府에서 실시하는 것처럼 政策的

으로 국내업자들이 損害를 보지 않도록 去來相對國과 貿易紛爭에 관한 協定을 맺어 두는 것이 바람직하며 국내업자들이 클레임절차에 대하여 處理를 신속히 할 수 있도록 實務者를 대상으로 實務敎育이 必要하다 하겠다. 또한 클레임 발생시에는 어떠한 損害가 따른다는 것도 확실히 인식시켜 클레임의 발생을 事前에 豫防토록 하여야 할 것이다.

# 第4章 韓國의 貿易클레임 事例와 問題點

## 第1節 貿易클레임의 事例

### 1. 事例研究

本章의 事例研究는 지금까지 발생된 貿易클레임중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品質不良과 제고품수출 견본과 다른 품질을 수출하는 한탕주의, 包裝不良, 口頭로 체결한 手數料契約 등에 관하여 事例를 分析하고 事例에 대한 본인의 意見을 論述하였다.

事例 1) 品質不良으로 인한 클레임 事例 25)

① 去來 및 클레임 提起經緯

㉠ 提起商社 : 호주의 C社

㉡ 被提起商社 : 韓國의 甲社

㉢ 紛爭品目 : 紡(積)絲(Yarn)

㉣ 紛爭原因 : 品質不良

㉤ 請求金額 : 호주 $ 35,623

韓國의 甲社는 1987年 3月경 호주의 C社로 부터 2次에 걸쳐 Polypyopylene Multi-Filament Yarn 6,200kg, US $ 15,500 상당의 取消不能貨換 輸出信用狀을 받고 輸出 完了하였으나, Waxing or Oiling의 含量不足, 脫色(Colour Change)등에 따른 品質不良을 理由로 클레임을 提起받았음.

---

25) 大韓商事仲裁院, 仲裁, VOL. 203, 1988. 12.

② 提起者側 主張要旨

韓國의 甲社에서 供給된 Yarn은 Italy에서 供給된 Yarn에 비해 作業能率이 현저히 떨어지고 있다.

甲社에서 供給된 Yarn은 Waxing 또는 Oiling이 不足하여 편직기에 걸리는 경우가 많고 Italy의 Yarn에 비해 30% 정도의 勞動時間이 더 소요됨에 따라서 甲社는 melbourne college of textile 研究所의 檢定報告書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 製造勞賃의 差異 A $ 11,894, 재직 LOSS A $ 20,484 및 脫色으로 인한 損害額 A $ 3,245 을 합한 A $ 35,623을 賠償하여야 한다.

③ 被提起者側 答辯要旨

當社는 P.P.絲를 air texturing용으로 輸出할 당시는 호주 멜본市 B社로부터 하등의 異議를 받지 않으므로 本件의 提起商社인 C社가 기계 및 P.P.絲를 인수 하였을 때 品質을 變化시킬 하등의 理由가 없었으며, 또한 C社도 Waxing이나 Oiling에 관해 특별히 要請한 事實이 없었다.

C社는 當社 供給絲와 이태리絲를 비교해서 品質의差異가 있다고하여 A $ 35,623의 클레임을 提起하고 있으나,이태리 絲와 當社 P.P.絲의 製造方法은 根本的으로 差異가 있다.

C社는 한때 當社의 Buyer였고, 現實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니 한편으로는 도의적인 責任을 느끼면서 C社가 脫色現狀으로 인한 損害額이라 主張하는 A $ 3,245만을 C社에 支給할 용의가 있다.

④ 處理結果

大韓商社 仲裁院은 當事者會議를 周旋하여 本件 클레임의 最終的인 解決을 위해 甲社가 C社에 A $ 7,000을 支給할 것을 合議하였으며, 合議金額은 次期去來를 통해 賠償토록 하는 方法이 採擇됨에 따라 持續的인 去

來關係가 維持되었다.

⑤ 本 事例에 대한 의견

本件을 통하여 살펴본 바와같이 品質에 관하여서는 Buyer 相談時 부터 이에대해 協議토록 하여야 겠다.

事例 2) 品質不良으로 인한 紛爭事例 26)

① 去來 및 클레임 提起經緯

㉠ 申請人 : 韓國의 J 會社

㉡ 被申請人 : 韓國의 S 會社

㉢ 紛爭品目 : 코팅원단

㉣ 紛爭原因 : 코팅불량

㉤ 請求金額 : US $ 40,000

申請人의 소개로 국내의 3개 봉제 수출업체(甲會社, 乙會社, 丙會社)는 봉제품을 독일의 C회사에 수출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契約數量과 金額은 각각 다음과 같다.

1) 甲會社 : 여아용 자켓 2,000벌 ( 금액 US $ 17,033 에 상당 )

2) 乙會社 : 여아용 자켓 2,004벌 ( 금액 US $ 20,040 에 상당 ),여아용 조끼 5,016벌 ( 금액 US $ 25,247 에 상당 ), 남아용 스키복 2,004 벌 ( 금액 US $ 10,020 에 상당 )

3) 丙會社 : 여아용 자켓 2,200벌 ( 금액 US $ 16,848 에 상당 ), 남아용 자켓 4,200벌 ( 금액 US $ 36,400 에 상당 )

한편 被申請人은 위의 신청외 3개 봉제 수출업체에게 ①Nylon Taffeta에 Pearl Coating한 원단(Pearl Nylon 이라 칭함)과 ② T/C에 Pearl C-

---

26) 大韓商事仲裁院, 仲裁, VOL. 192, 1988. 1.

oating한 원단(Pearl T/C라 칭함)을 供給하기로 하였다.

이에 위의 신청외 3개 봉제 輸出업체는 被申請人으로 부터 Pearl Nylon을 총 33,851야아드(금액 US $ 30,465 에 상당), Pearl T/C를 총4,100야아드 납품받아 봉제가공 후 輸出을 完了하였다.

② 紛爭內容

위의 수출된 봉제품 중 Pearl Nylon으로 가공한 製品은 몇번만 입어보아도 마찰로 인하여 코팅이 벗겨지거나 세탁후 코팅이 벗겨지는 결함이 나타났고 또 그 정도가 매우 심각한 상태라는 항의와 함께 US $61,689의 클레임이 서독의 바이어로 부터 申請人에게 提起되었다.

이에 申請人은 서독 바이어의 국내 대리점으로서 서독의 바이어 뿐만 아니라 국내의 3개 봉제 수출업체로 부터 본건 損害賠償 請求에 대한 모든 權限을 위임받고 被申請人에게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에 이른 것이다.

③ 兩當事者의 主張要旨

가. 申請人의 主張要旨

드라이 크리닝을 할 수 없는 製品인데도 드라이크리닝을 하였기 때문에 코팅이 벗겨졌다고 하는 被申請人의 主張은 맞지 않는다.

다만 Pearl T/C의 경우는 드라이크리닝을 하지 않으면 코팅이 벗겨지는 問題가 발생하지 않았는데, 이는 원단의 종류에 따라서 코팅의 사용재료 및 방법을 달리해야 했음을 나타내는 것인 바, 이 점에 대해서는 바이어 측도 다소의 問題點을 인정하여 실제의 총 클레임 金額인 US $ 61,689 중에서 US $ 40,000만을 請求하는 것임.

나. 被申請人의 主張要旨

申請人이 被申請人의 하청공장을 방문하였을때, Nylon Taffeta 에 3회 코팅한 것은 價格이 맞지 않으니 2회 코팅한 것으로 바꿔줄 것을 要求하면서 申請人 자신도 코팅한 면의 접착성을 염려하여 드라이크리닝이 不可能하며 물세탁시에도 30℃에서 하도록 하는 꼬리표를 각 商品마다 붙이겠다고 약속한 바 있었으나, 신청인이 제시한 SGS 檢査報告書에서 보듯이 당초 약속과는 달리 드라이 크리닝과 40℃에서 물세탁이 가능한 꼬리표를 붙인 것은 신청인과 서독 바이어의 큰 실책임.

被申請人이 納品한 원단을 KOTITI 에 서독의 검사방식대로 2회에 걸친 品質檢査結果 아무런 瑕疵가 없게 나타났음.

다. 判定注文

1)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US $ 11,000의 원화 상당액
   금 8,776,900원을 은행도 어음으로 즉시 지급한다.
2) 위의 은행도 어음의 결재일은 한달 후에 위 금액의 반을, 두달 후에 나머지 반을 결재하기로 한다.
3) 중재재비용은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4) 신청인의 나머지 청구는 포기한다.

라. 判定理由의 要旨

위 申請人의 請求에 대하여 申請人과 被申請한 當事者 쌍방은 判定 注文과 같은내용의 화해로써 이사건의 해결을 원하여 이를 판정으로 내려줄 것을 구함으로 大韓商事仲裁院의 商事 仲裁規則 제52조에 의거 注文과 같이 판정한다.

商事仲裁規則 제52조 (和解에 의거한 판정)

당사자가 중재절차 중에 화해를 하였을 경우에 당사자가 요구하면 중재인은 합의된 화해의 조항을 판정으로써 기재할 수 있다.

事例 3) 在庫品 輸出과 관련한 클레임 事例 27)

① 去來 및 클레임 提起經緯

㉠ 提起商社 : 라이베리아의 F 社

㉡ 被提起商社 : 한국의 Y 社

㉢ 紛爭品目 : T - Shirts

㉣ 紛爭原因 : 品質不良

㉤ 請求金額 : US $ 17,101

② 클레임 提起經緯 및 提起者主張

라이베리아의 Y社는 1987年 11月 韓國의 Y社側으로 부터 T-Shirts 2 만개를 US $ 10,000에 수입하였으나 도착된 物品이 신품이 아니고 중고품이라는 사실을 Monrovia 소재 Lloyd's Agents 의 檢査를 통하여 發見하고 大韓商事仲裁院에 클레임斡旋을 요청하는 것임. 아울러 본 클레임과 관련한 입증서류(Lloyd's Agrnt가 발급한 survey report 및 해당 photographs)를 동봉하며 아래 산출근거에 따라 Y社에 US $ 17,101을 청구함.

| | |
|---|---|
| 20,000 pcs. Tee shirts ( not used ) C.I.F. | U S $ 10,000 |
| Customs duty | U S $ 6,000 |
| Port charges, Transport labour and other expenses | U S $ 1,000 |
| Survey fees | U S $ 101 |
| Total claims | U S $ 17,101 |

27) 大韓商事仲裁院, 仲裁, VOL. 196, 1988. 5.

③ 被提起者의 答辯要旨

本社는 提起者側이 주장하는 클레임 자체는 수락하나 US $ 15,000을 배상함으로써 최종 해결코자 함.

賠償方法은 여자용 자동우산(재고품) 수출시 할인코자 함.

④ 處理結果

大韓商事仲裁院은 상기 국내 당사자의 입장을 제기자측에 알려주면서 당사자 간에 직접 교섭을 통하여 우호적으로 해결할 것을 권유하면서 원만히 해결을 보았다.

⑤ 本 事例에 대한 의견

本 事例는 중재권유에 의해 現物報償으로 잘 해결되었으나 그 원인을 집지 않고 넘어갈수가 없다. 계약 체결시에는 상대편의 사업자와 충분한 토의를 거쳐서 契約을 체결하되 비정상품에 대한 근거조항을 명백히 서류상에 명시해 둠으로써 추후 紛爭을 방지할수 있다.

事例 4) 見本과 다른 品質로 인한 클레임 事例 28)

① 去來 및 클레임 提起經緯

㉠ 提起商社 : 남아연방공화국의 B 社

㉡ 被提起商社 : 韓國의 A 社

㉢ 提起品目 : 假눈썹

㉣ 提起原因 : 見本과 다른 品質

韓國의 A社는 남아연방공화국의 B社와 假눈썹 10,000셋트의 賣買契約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見本이 B社로 부터 먼저 송부되어 왔고 A社는 이에 對한 對應見本을 보내어 承諾을 얻은 賣買契約이 締結 되었으므로 見本대

28) 任石昌,貿易클레임 發生과 防止,漢陽大學校 經營大學院 碩士學位論文, 1983, p.20.

로만 製造하여 船積했더라면 問題가 없었으나 그렇지 못했었다. A社는 B社로 부터 貨物引受후 곧 見本과 다르다는 이유로 클레임을 提起당했다.

② 提起商社의 主張要旨

船積物品이 見本과 다르다는 이유이다.즉 눈썹이 고르지 않고 듀브자체가 짧고 눈썹이 부드럽지 않으며 딱딱하다는 이유였다.

③ 解決經緯

A社는 이 클레임을 일단 是認하고 다만 賠償方法에 있어서는 다음 注文時 單價面에서 考慮하기로 提議하여 結局 解決되었다.

④ 本 事例에 대한 의견

이와 같이 見本과 상이하게된 이유는 A社의 담당직원이 對應見本을 보내면서 이에 대한 備置見本을 따라 마련하여 두지 않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막상 生産에 들어 가려할 때는 記憶을 더듬어서 만들 수 밖에 없었는데 그 기억이 제대로 맞지 않아서 이와 같은 損失을 입지 않으면 안되게 된 것이다.

이 클레임의 特色은 한국의 A社는 견본을 提示한 후에 備置見本을 마련하지않아 제품 생산시에 어림잡아 제품을 생산 공급한데서 클레임이 발생되었다. 이는 견본의 기본 조건인 賣渡人과 買受人이 각각 보관하여야 하는 사항을 무시하므로써 발생된 클레임이다.

事例 5) 包裝不良으로 인한 클레임 事例 29)

① 去來 및 클레임 提起經緯

㉠ 提起商社 : 美國의 B 社

㉡ 被提起商社 : 韓國의 A 社

---

29) 姜二秀, 前提書, p. 40.

㉢ 提起品目 : 진주공예품

㉣ 提起原因 : 包裝不良

㉤ 提起金額 : US $ 400

韓國의 A社는 美國의 B社와 US $55,000에 해당하는 眞珠工藝品 輸出契約을 맺어 信用狀開設을 받았다. 船積條件은 1차 선적분이 미화 2,500弗, 2차 선적분이 미화 3,000弗의 分割船積이었다. A社는 信用狀條件에 따라 2차에 걸쳐 선적을 완료하였고 商品이 무사히 도착될 것만 바라고 있는데, B社로 부터 包裝不良으로 인하여 내용물에 破損이 있었다는 이유로 美貨 400弗이 賠償請求를 받았다.

② 클레임에 대한 被提起者의 答辯

A社는 B社의 이 클레임에 대하여 타상품과 같이 나무箱子에 넣어서 包裝을 했는데 일부만이 破損되었다는 事實은 잘 이해가 안가며 설사 파손품이 있었다 하더라도 輸出條件이 FOB인 만큼 保險會社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이므로 응할 수 없다고 회신하였다.

이에 B社는 A社의 主張에 대하여 保險會社로 부터 保險金을 받을수 없는 損害라고 주장하여 재차 賠償을 促求하여 왔다.

③ 解決經緯

本件에 대한 클레임은 結局 韓國의 A社가 提起者의 클레임 請求額 金額인 美貨 400弗을 支給하는 것으로 解決을 보게 되었다.

④ 本 事例에 대한 의견

本事例는 現金賠償한 경우로써 A社는 眞珠工藝品이 나무상자에 넣어서 船積하면 하역작업중 다소 소홀히 취급되더라도 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하였으나 그것은 크나큰 실수였다는 것을 알수가 있다. 船積 및 荷役

시 인부들이 조심하여 취급해 주겠지 하는 우리 생각과는 달리 인부들은 그렇게 친절하지 못하다. 따라서 물품에 흠집이나거나 깨질만한 요소들을 사전에 예측하여 포장시에 豫防對策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하겠다. A社도 사전에 對策을 강구하였다면 힘들여서 벌어들인 外貨를 다시 내주는 과오는 없었을 것이다.

事例 6) 口頭로 締結한 手數料契約으로 인한 클레임 事例 30)

① 去來 및 클레임 提起經緯

㉮ 提起者(去來斡旋者) : 필리핀의 C 社

㉯ 被提起者(輸出商) : 韓國의 D 社

㉰ 輸入商 : 필리핀의 N.P.C. 및 R.W.D.C.

㉱ 去來品目 : Cates for Hydroelectric Project 및 G.I.Pipes

㉲ 請求金額 : US $ 18,325

韓國의 D社는 필리핀 소재 C社의 去來斡旋 덕분으로 수입상 N.P.C.와 R.W.D.C.측이 발주한 입찰에 참여하여, 낙찰부분 수문 13sets(US $ 1,136,000) 및 G.I.Pipes32,400pcs(US $ 899,690)를 1986년 6월 및 10월에 각각 輸出하였음.

C 社는 상기 去來를 성사시키기 위하여 D 社를 위해 수행한 업무 및 편의제공과 관련하여 D 社側에 수차례 追加手數料 및 未支給 手數料支給을 촉구했음에도 當事者間의 의견 및 주장차이로 해결치 못함에 따라 주한 필리핀대사관을 통하여 1986년 11월 클레임 斡旋을 依賴해 왔음.

---

30) 大韓商事仲裁院, 仲裁, VOL. 184, 1987. 5.

② 提起者의 主張要旨

N.P.C社側과의 去來중 1986년 6월 수문 5대에 대한 design변경으로 인하여 原契約全額외에 增額된 輸出代錢 US $ 193,190 와 연관된 手數料 US $ 4,829 를 支給하도록 하여 줄 것.

R.W.D.C. 측과의 去來와 관련하여 相談時 D 社가 支給하기로 約束한 去來斡旋額 US $ 899,690의 1.5%에 해당하는 US $ 13,495. 를 지급하도록 하여 줄 것.

上記 追加手數料 및 未支給手數料를 합한 US $ 18,325. 을 D社側에 請求함.

③ 被提起者의 斡旋要旨

1) 追加手數料는 支給할수 없는 입장인 바 구체적인 理由는 다음과 같음.

첫째 : 物品供給契約書上에 去來斡旋手數料(Peso 151,700)는 N.P.C.의 입찰조건에 의거하여 N.P.C.가 직접 C社側에 支給토록 合意되었으며,이를 이미 支給했음.

둘째 : design 변경에 따른 契約代金增額時 C社는 本社의 거듭된 요청에도 불구하고 agent로서의 去來斡旋上의 편의를 提供하지 않았음. 따라서 本社는 직접 N.P.C.측과 契約을 締結했음.

셋째 : 本社는 증액분에 해당하는 追加手數料를 C 社側에 支給 하겠다는 언질을 준 적이 없음.

넷째 : 契約書에 따르면 N.P.C.가 알지 못하는 어떠한 형태의 手數料 支給은 禁止되어 있음.

2) 未支給手數料 US $ 13,495. 에 대한 立場本社는 C.I. pipes輸

出과 관련한 去來斡旋 代價로 輸入商인 R.W.D.C. 가 全契約代金을 결제한 후 적절한 時期에 去來斡旋額의 1%에 해당하는 US $ 8,996. 을 手數料로 支給하겠다고 口頭로 約束했을 뿐, R.W.D.C. 주장과 같이 契約金 一部를 결제하지 않았고, 더구나 手數料率도 1%가 아닌 1.5%를 手數料로 支給하겠다고 約束한 적이 없음. 따라서 원칙적으로 수입상이 契約代金을 전액 결제하기 전까지는 本社가 約束한 수출액의 1%에 상당하는 수수료 조차도 支給할 수 없으나, 當事者의 우호적인 해결을 위하여 0.5%는 1987년 1월 15일까지 支給하고 나머지 0.5%는 R.W.D.C.측으로 부터 輸出貸金을 전부 회수한 후 지급함으로써 본건을 해결하겠음.

④ 處理結果

大韓商事仲裁院은 1986年 12月 18日 提起者側에 被提起者의 立場 및 解決方案을 알려줌과 동시에 문제된 클레임 件의 원만하고 조속한 解決을 위하여 다시 被提起者側과 접촉할 것을 권유하였음.그후 1987年 1月 16日 提起者側에서 알려온 바에 따르면,

첫째, C社는 追加手數料에 대한 클레임을 철회하였음.

둘째, 未支給 手數料 관련 部分에 대해서는 手數料率을 1% 로 確定하고 0.9% 는 1987年 1月末까지는, 잔액 0.1%는 수입상의 수입대금 완불시 支給키로 合意解決하였음.

⑤ 本 事例에 대한 의견

本件을 통하여 살펴 본 바와 같이 手數料契約은 口頭에 의하건, 文書에 의하건 그 效果는 같다. 그러나 이것은 法律論에 불과하며 실무상으로는 口頭에 의한 契約은 立證이 매우 곤란하므로 紛爭의 原因이 된다. 따라서 相談의 結果는 반드시 文書化해야 하며 어떤 法來에 따른 手數料인가, 그

리고 手數料産出의 基準과 支給時期 등을 明示的으로 文書化함으로써 紛爭을 豫防할 수 있을 것이다.

## 2. 綜合意見

우리나라의 年間 交易規模는 1천5백億 달러를 넘어서 세계 12위를 차지하고 있지만 貿易業體의 輸出入業務 수행능력은 세계 貿易業界로 부터 아직도 미숙하다는 소리를 들을 만큼 헛점 투성이다. 근사한 商品을 만들어 놓고도 包裝을 엉성하게하여 海外 바이어로 부터 퇴짜를 맞는가 하면 契約書 없이 去來를 했다가 不利益을 당하는 경우가 많다. 品質不良이나 納期不履行 등은 우리 여건상 불가피하다 하더라도 제대로 만든 商品을 사소한 不注意와 誠意不足으로 제값을 못받고 오히려 우리 貿易業體의 헛점을 역이용한 海外 바이어들의 클레임제기로 엉뚱한 被害를 입는것은 크게 잘못된 것이라 할 수 있다.

大韓商事仲裁院이 1991년 7월 부터 6개월간 서울, 부산, 마산등 수출업체가 밀집해 있는 全國 6개지역의 貿易業體 3천 5백개를 對象으로 貿易紛爭 實態調査를 실시한 결과 調査對象의 67.6%가 海外 바이어로 부터 클레임을 당한 經驗이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클레임제기 事由로는 品質不良(27.8%) 船積遲延등 納期不履行 (20.3%)이 주종을 이루었지만 數量不足(15.6%) 包裝不良(13.4%) 契約違反(7.4%) 대금미지급(3.4%)등 발생해서는 안될 事由도 적지않은 比重을 차지하고 있다.

調査對象중 42.6%가 契約書없이 去來를 하고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契約書를 使用하고 있는 業體들도 35.9%만 상세한 契約條項이 명시된 契約書를 사용할뿐 나머지는 契約의 一般條項이 명시되지 않은 契約書를 사용

하고 있어 기본적으로 바이어들의 클레임제기에 아무런 措置를 취하지 못한체 당하기만 하는데 引受拒絶을 經驗한 貿易業體가 상당수 되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따라 바이어들의 클레임 소지를 미리 예방할 수 있도록 상세한 契約書를 作成하고 클레임이 발생하면 商事仲裁院등 公權力 있는 기관을 통해 적극적으로 解決하는 자세를 보여야 할 것이다.31)

日本의 경우에는 政府에서 영국, 알제틴 및 페루등 여러나라와 仲裁에 관한 2國間 條約을 締結하였으며,제네바 의정서, 제네바조약 및 뉴욕조약에도 가맹하여 자국내의 企業體들을 보호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政府에서 去來相對國들과 貿易協定을 맺어 국내 기업체들을 보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第2節 貿易클레임의 問題點

### 1. 貿易클레임의 過多發生

우리나라의 클레임 發生은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日本에 비하여 적으나 經齊規模와 與件의 差異가 있다하나 비슷한 輸出實績을 達成한 年度를 比較해 보면 클레임額과 件數가 日本보다 많은때도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의 輸出에 대한 政府의 重點的인 育成策에 따라 輸出 構成比도 종래는 繊物類 및 衣類가 대종을 이루어 오던 것이 요즘에는 차츰 機械 및 重化學工業 製品의 比重이 높아가고 이런 品目들은 去來額數가 크기

31) 『한국일보』, 1992, 2, 8 <9면>.

때문에 클레임 請求額도 大型化하고 있다. 3章에서 日本과의 重化學 부문에 대한 클레임額과 件數를 比較해 보았듯이 件數當 클레임額이 많아진다는 것은 벌어들인 外貨를 다시 내주어야 하는 아픔을 주는 동시에 對外信用을 잃어버림으로써 對外 輸出增大에 많은 問題를 야기시키고 있다.

## 2.輸出商品의 品質管理 疏忽

品質不良이 貿易클레임의 原因中 큰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契約에서 정한 物品의 品質보다 실제로 送付한 品質이 좋지 않을때 發生한 클레임이 많을 것이다.

클레임 提起者들 중에는 같은 工場에서 나온 物品의 品質이 一部는 훌륭한데 一 部는 나쁜것을 이해할수 없다는 것이다.

## 3. 一部 輸出業者의 對外信用의 損傷

對外 信用의 유지,강화가 持續的인 交易擴大의 前提이자 요체임을 認識해야 한다. 만의 하나라도 우리 輸出의 內容이나 慣行, 進行過程이 質的인 面에서 우리의 競爭國들 보다 세계시장에서 낮게 認識되거나 評價 받는다면 輸出 韓國의 길은 그 만큼 험난해진다. 이런 관점에서 일시적 方便이나 僥倖일지라도 한탕주의식의 去來는 당연히 排除되어야 하며, 일단 약정된 것이라면 그것이 당장 損害를 가져온다 하더라도 맺어진 約束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이것이 長期的인 실익과 去來擴大를 保障할수 있는 信用基盤의 터전이기 때문이다.

## 4. 클레임 解決에 대한 消極的 姿勢

우리나라의 클레임액과 건수는 輸出額에 비하여 적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실제 클레임액에 비하여 숨겨져있는 클레임이 많다고 보아야 妥當할 것이다.

이와같이 클레임을 노출시키지 않고 비공식적인 方法으로 處理하는 이유는 行政制裁를 당하지 않을까하는 의구심에서 가능한 클레임을 노출시키지 않으려는 의도가 있다고 본다.

## 5. 貿易 契約의 認識不足

貿易은 契約을 締結하는 段階에서 부터 履行能力을 고려하여 契約條件, 關聯貿易慣習 및 法規등에 대한 철저한 檢討를 하여야하겠고 또한 信義의 바탕위에서 충분한 履行이 있어야 한다. 그렇게되기 위해서는 實務者들에게 契約業務에 관한 교육을 치중시키는 한편, 契約書說明書 및 클레임 事例集을 發刊하여 각종 契約業務에 철저를 기하여 클레임의 豫防에 萬全을 기해야 하겠다.

# 第5章 韓國의 貿易클레임 解決을 위한 方案

## 第1節 貿易클레임의 解決方案 수립과 留意事項

### 1. 貿易클레임 解決方案 수립

가. 對內對策

貿易클레임의 發生은 事前에 豫防하는 것이 무척 重要하다.일단 클레임이 發生하면 피제기자는 損害를 補償해 주어야 하므로 經濟的 損害를 입을뿐만 아니라 그 클레임을 解決하기 위하여 많은 時間과 經費, 勞力이 소요되므로 만일 이를 다른 去來에 사용한다면 얻을 수 있는 利益을 상실하게 되므로 2가지 損害를 입게 된다. 따라서 여기서는 貿易클레임의 豫防策과 事後對策에 대해서 언급하고자 한다.

(1) 輸出商品에 대한 生産 技術의 向上

上記의 原因別 클레임 發生實態에서 살펴 보았듯이 클레임의 豫防對策으로 가장 시급한 것은 輸出商品에 대한 生産技術의 向上으로 品質不良클레임의 發生을 根絶시키는 일이며 이를 實現하기 위하여는 老後된 機械, 設備의 對替 및 生産技術의 과감한 導入과 품질관리 해당자의 자질 향상을 기해야 하겠다. 그리고 品質의 질을 높이고 高價品을 開發하는 동시에 이제까지 量的인 目標 達成에 치중하여 등한시 해오던 少量注文도 새로운

市場 및 品目의 開拓을 先導할 수 있어야 하겠다.

(2) 品質管理 철저

우리나라 貿易클레임의 發生原因中 件數面에서 比重을 가장 많이 차지하는 것은 品質不良이며 一般的으로 品質不良이라 하면 品質相違, 不良品質, 等級拒否, 異品混入, 各種損傷, 變質, 變色등이 있다.

우리나라의 輸出製品중 品質不良클레임이 많은 部分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對策으로는 品質管理 該當者의 資質向上을 기해야 하겠으며 또한 輸出入業者들이 事前에 仲裁院을 訪問하여 品質 不良으로 發生하는 事例 說明을 듣거나 相談을 통하여 品質管理의 重要性을 認識함도 좋을 것이다.

(3) 貿易契約의 認識强化

契約을 締結하는 段階에서부터 條行能力을 고려하여 契約條件, 關聯貿易慣習 및 法規등에 대한 철저한 檢討를 하여야 하겠고 또한 信義의 바탕위에서 忠實한 條行이 있어야 하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實務者들에게 契約業務에 관한 教育을 치중시키는 한편 大韓商事仲裁阮에서 클레임의 事前豫防相談과 클레임 事例 등을 說明함으로써 貿易實務에 도움을 주는 것도 重要하다.

또한 不良買受人과의 去來를 警戒하면서 이들의 고의적인 클레임 題起를 事前에 防止해야 할 것이며, 불가피한 障害에 基因하여 클레임이 發生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을 고려하여 각각 特殊去來에 적절한 紛爭 解決條件을 協定하여야 할 必要가 있다. 32)

(4) 輸出業者의 對外信用恢復

---

32) 全昌源 , 新貿易實務 , 日新社 ,1984, p.446.

원래 契約은 相互間의 신뢰를 바탕으로 하여 成立되는 것이며 만약 相互間에 不信의 要素가 있을 때에는 그 成立 자체가 어려운것이다. 하나의 契約이 성립되어 條行過程을 거쳐 당초의 契約締結 目的을 충분히 達成하기 위하여는 信義誠實을 바탕으로 한 相互間의 協力義務가 절대적인 前提條件이 되며 이것은 法的槪念 내지 法的規範 의미를 論하기 전에 商 道義上으로도 이 原則의 基盤 위에서만 향상될 수 있을 것이다.

(5) 클레임 解決의 적극적 姿勢

클레임 解決을 위하여는 클레임 發生시 대외공신력 唯持, 確保한 海外市場의 唯持 및 새로운 海外市場開拓을 위하여 클레임 解決의 지연을 防止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訊速하고도 합리적인 解決이 되어야 한다.그러나 先進國일수록 國家가 국제거래에 관여하는 면은 극히적고 거래자체를 원칙적으로 當事者間에 自率的으로 이루어지며 클레임이 發生한 때에도 당사자가 스스로 해결하려고 적극적인 노력을 하는 것을 많이 볼 수 있다.

(6) 惡德業者에 의한 Market Claim 對策

市況이 나쁘게 되면 損害를 보충키 위해 相對方에게 트집을 잡아 돈을 받아내려고 클레임을 提起하는 것인데 이것에 대한 豫防策으로는 우선 첫째로, 信用狀條件에 맞는 誠實한 條行을 하여야 하는데 이것은 Buye 와의 Market 이 不安定한 때에는 트집을 잡을수 없도록 철저한 契約條件의 條行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둘째로, 品質條件을 잘 設定해 두어야 하는데,이것은 信用狀과 關聯된 트집을 잡을수 없게 되면 Buyer는 반드시 品質不良을 이유로 클레임을 提起 한다는 것이다. 이때는 契約書에 設定된 品質條件에 따라 是非가 가려지도록 함으로써 Buyer 에게 함부로 클레임을 提起하지 못하도록 쐐기를

박아둘 필요가 있다.

셋째로는, 契約에 Gold Clause를 設定하는것이 좋은데, 마아켓 클레임은 契約時와 引受時의 貨幣價格이 差異가 나서 비롯되는 경우도 빈번한 만큼 이러한 價格變動에 따른 衝擊을 吸收하는 制度的裝置를 講究하여 둔다면 事前豫防이 가능하다. 즉, Gold Clause를 設定하여 줌으로서 契約當事者들을 계약시의 狀況대로 보호할 수 있다.

나. 事後對策

1980年代 上半期에는 勞使紛糾와 社會的 不安등 經濟 活動이 크게 萎縮되어 있었으나 下半期부터 社會가 安定되고 경기 擴張策이 推進됨에 따라 輸出도 恢復되기 시작하였고, 輸出의 量的 伸張 못지 않게 質的으로 改善되어 重化學製品이 輸出增加를 主導하여 전체 輸出에 대한 比重도 1984年의 166億$에서 1985年에는 176億 $ 로 向上 되었고 外貨 取得率도 꾸준히 向上되어 1980年 63.2%, 1983年 65.6%, 84年 65.7%, 85年 65 % 였다. 33)

따라서 우리는 계속하여 輸出伸長에 勞力하여야 할 것이며 아울러 클레임의 增加勢 특히 大型化를 최대로 抑制하여 에써 벌어들인 外貨의 流出을 最少化 하여야 되겠다. 그러므로 클레임의 事後 對策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을 들수 있다.

(1) 클레임 解決에 대한 誠實性.

일단 제기된 클레임은 訊速, 公正, 精確한 處理를 통하여 輸出業者의 對外信用度를 제고하여야 할 것인바 이를 위해서는 클레임解決에 대한 피제기자의 고의적인 責任 회피에 대하여 處罰을 强化하여 피제기자 상사로 하여금 클레임을 성실하게 解決하도록 誘導하여야 할것이며 所在不明 및

33) 『韓國經濟新聞』, 主要貿易動向指標, 1986年 3月 17日.

逃避者에 대한 追跡 調査를 강화하고 불성실한 輸出業者에 대한 指導, 啓蒙을 계속 하여야 할 것이다.

(2) 商事 仲裁의 效率的 運營.

우리나라의 商事仲裁制度가 國家經濟活動의 촉매제로써 역활을 하기 위해서는 紛爭의 訊速한 處理를 통한 經濟性이 重要하며, 우리나라의 商事仲裁制度는 國際的 趨勢에 따라 制度的 보완을 講究하면서 UN 國際貿易法委員會 (UNCITRAL)가 추구하는 仲裁制度의 全 世界的 調和와 均衡에 촛점을 맞추어 나가지 않으면 안될것이며,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商事仲裁制度는 國際的 堅持에서 運用 되어야 하고, 自律的이고 獨立이 保障되는 運營을 함으로써 外國人에게 신뢰감을 심어주는 重要하다.

다. 對外 對策.

(1) 信義 誠實의 原則.

貿易 去來에서 가장 重要한것은 신뢰관계이며 이를 信用 이라고 한다. 信用(CREDIT) 곧 商業社會에서는 無形의 資本이라고 한다. 그러므로 相互間의 商去萊에서는 信義와 성실로써 相對方에게 신뢰를 維持하여 去來하여야 한다.

信義, 성실의 原則은 民法 제2조 제1항 에서 私法의 根本原理로 채택되고 있다.34) 오늘날에 있어서는 非但 私法 分野에서 뿐만 아니라 公法을 包含한 모든 法秩序의 基本原理로 採擇되고 있으며 貿易 去來에서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원래 信義, 誠實原則은 論理的 觀念, 道德的 規範으로서 이것이 法律 領域에 導入되어 法的 觀念, 法的 規範으로써 사용된것은 오래된 일이다.

---

34) 姜二秀, 貿易클레임, 韓國關稅協會,1975, pp. 158 ~ 159.
이는 스위스 민법 제2조 제1항을 따른것이다.

(2) 去來處의 嚴選과 信用 調査.

클레임의 防止를 위하여는 去來處의 경선이 필요하며 外國貿易에 있어서는 相對方이 서로 外國에 있고 言語, 風習, 慣習, 文化, 法律등이 서로 다를 뿐만 아니라 面談할 기회 조차 없는 것이 보통이므로 相對方의 信用度가 매우 큰 比重을 차지한다.

信用 조사시에는 상대방의 經濟的能力(支給能力)을 確因하여야 하며 人格이나 道德心도 무시 할수가 없다. 그러므로 일반적으로 信用調査를 할 때에는 財政能力(Capital). 去來能力(Capacity). 道德心(Character) 등의 3 C's가 基本이며 여기에 國家(Country) 와 通貨 (Currency) 를 追加하면 5 C's 라 한다. 道德心은 상대방의 人格을 말하며, 去來能力은 營業能力(去來量, 經驗, 營業方法)을 말하며 財政能力은 支給能力을 말하고 국가는 經濟的狀況 通貨는 相對國의 通貨의 安定性을 말한다.

## 2. 貿易클레임의 處理時 留意事項

가. 클레임 提起時 留意事項

클레임 事由가 發生하여 클레임을 提起해야 할 때는 먼저 訊速하게 클레임의 發生事實을 相對方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클레임 통지는 당사자간에 約定期間이 있으면 그 기간내, 約定期間이 없으면 빠른 期間內에 제기해야 하지만 클레임 통지는 모든 證憑書類를 갖추기전에 一次的으로 損害에대한 賠償을 요구코자 한다는 意思를 알려야 한다. 보통 클레임의 통지방법도 契約條項에 挿入되는 수가 많은데 항상 契約條件을 어기지 말고 그대로 행해야 하며 만일 당사자간에 별도로 約定한 바가 없으면 가장 訊速한 方法으로 해야한다. 그러나 전화 등록자료가 남지 않는 방법은 후

일 이의 立證이 곤란하므로 삼가해야 한다. 이때는 가급적 클레임의 내용을 상대방이 파악할 수 있을 만큼 具體的으로 記載해야 한다.

클레임 통지의 한 例를 보자.

" We have just received 150 cases of Chinaware shipped by M.S Arirang on our order NO 689 of October 15, 1982 but regret to inform you that cases No 3 & 6 are broken and their contents were badly damaged due to faulty packings. The details and the amount of claim will be submitted to you as soon as we will obtain an authentic survery report there of. "

이 통지를 발송해 놓고 신속히 클레임의 明細와 證憑資料를 갖추어 正式으로 클레임을 제기하게 되는데 이때에는 문제된 물품의 明細와 클레임의 提起原因 그리고 請求內容 및 算出 根據 등을 具體的으로 記述하여야 하며 이때에 添附된 證憑資料는 당사자간 거래사실 관계 입증서류, 品質不良이나 수량부족의 경우에는 檢査報告書등 클레임사실의 입증자료 去來立證事實資料, 또한 金額的請求일 경우에는 클레임額의 算出限度 등 具體的이고 客觀的인 立證資料를 同封해야 한다.

흔히들 클레임이 發生하게 되면 過多한 請求를 하여 後日 유리한 합의에 도달코자 하는 例가 많은데 이로 인하여 상대방의 감정을 상하게 하여 해결도 어렵게 만들 뿐만 아니라 去來關係 마저도 끊어지는 경우를 자주 본다. 따라서 클레임 청구시에는 누가보아도 合當한액수를 具體的이고 客觀的인 證憑 書類를 同封하여 청구하여야 한다. 또한 클레임의 제기는 契約書상 당사자간에 期間 표시가 있으면 반드시 그 기간 내에 提起 하여야 한다.그러나 그러한 約定期間이 없으면 一率的으로 몇일내에 클레임을 제

기 하여야 한다는 것은 없고 결국 그때 그때의 사건 내용에 따라 결정 할 수 밖에 없다.

또한 이에 따라 各國마다 입법 에 35)도 다양 하므로 사전 계약에 명시 해 두는 것이 좋다.

나. 클레임을 提起 당한 경우 留意事項

클레임을 提起 당하게 되는 때는 일단 契約書, 信用狀, 船積書類, 클레임 제기서류, 檢査報告書, 텔렉스나 서한등 기타 클레임과 관련있는 書類를 收集整理 하여 아래事項을 檢討한 후 클레임 解決에 관한 立場과 方案을 상대방에게 訊速하게 提示하여야 한다.

가. 契約 條件의 未備에 의한 것은 아닌가 ?

나. 納品後 合理的인 期間內 請求된 것인가 ?

다. 瑕疵를 立證할 客觀的인 立證資料가 있는가?

라. 物品의 檢査는 公認檢證機關에 의해서 合理的인 期間내에 되었는가?

마. 瑕疵의 정도가 契約上 또는 去來慣例上 許容比率을 超過한것인가?

바. 損害請求額은 合理的 算出에 의한 妥當性을 지니고 있는가?

사. 당해 契約에서의 特性을 충분히 감안한것인가?

아. 장래 혹은 他去來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

35 ) ① 韓國商法 第691條 (買受人의 目的物의 檢査와 瑕疵通知義務)
商人間의 賣買에 있어서 買受人이 目的物을 수령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검사 하여야 하며 瑕疵 또는 數量의 不足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매도인에게 그 통지를 발송하지 아니 하면 이로 인한 계약 해제, 대금감액, 또는 損害 賠償을 청구하지 못한다. 賣買의 목적물에 즉시 발견할 수 없는 瑕疵가 있는 경우에 買受人이 6月내에 이를 발견한때도 같다.
② 日本商法 (526 조) : 우리 商法과 같이 지체 없이 검사하고 곧 통지 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③ 美國統一商法典(2-206 條) : 합리적 기간내 제기 할것을 요구 하고 있다.

자. 紛爭解決事項과 仲裁法의 檢討를 했는가?

위와 같은 내용을 모두 종합하여 가장 설득력이 있는 答辯을 보내야 한다. 왜냐하면 첫응답이 클레임 해결에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이때에 意思標示는 簡單明瞭하게 하고 書面이건 口頭건 성급한 約束을 하여서는 안된다. 이 성급한 약속은 후일 클레임 合議不履行이라는 클레임으로 發展해서 본래의 原因行爲와는 別個의 責任을 져야하는 경우가 있다. 自己去來를 이어갈 욕심으로 合議 했다가 결국 전액 賠償한 예가있다. 홍콩의 제기자가 市況이 나빠지자 이의 보복으로 10%의 클레임을 제기하자 한국의 피제기자는 다음의 텔렉스를 보냈다.

" WL PAY US $ 2,000 PLS SEND US NEW ORDER "

그러자 제기자는 이 텔렉스를 근거로 해서 클레임額 合議와 새로운 注文과는 별개의 문제라고 主張하며 결국 合意金 US $ 2,000을 받아 갔으나 나쁜 市況에 새로운 注文은 올리가 없었다.

만일 文章書頭에 "SUBJECT TO" 라는 문구만 넣었어도 유리한 入場에서 클레임을 解決할 수 있었을 것이다.

# 第2節 貿易클레임의 解決方案

## 1. 當事者間의 友好的 解決方案

### 가. 請求權의 拋棄 (Waiver of claim)

損害를입은 일방 당사자가 他方當事者로부터 同 損害를 補償 받을수 있는 권리인 請求權을 行事하지 않는 것으로서 他方當事者가 同 損害의 報

價提議를 통한 해결시 대체적으로 청구권의 포기가 이루어진다.

이 請求權의 抛棄는 클레임의 액수가 피신청인(Claimee)이 신청인(Claimant)에게 다른 條件으로 對替補價함으로써 원래 제기되었던 클레임을 抛棄하는것이다.36) 이 경우 추후 동일한 실수를 하지 않도록 單純警告(Warning)의 구실도 한다.

나. 和解(Amicable Settlement)

당사자가 직접 협의를 통하여 相互平等의 原則하에 당사자가 납득할수 있는 타협점을 찾는 방법으로써 和解는 대체적으로 約定書(Agreement)의 締結로서 나타나며 和解는 당사자 간의 교보에 의해서 裁判외에 和解(Settlement out of court)와 法院의 仲介에 의한 和解, 즉 소송사의 화해가 있다. 裁判외의 和解에는 ①당사자가 서로 양보 할것 ②그 뜻을 約定할것 ③紛爭을 終止할것 등 3가지 요건을 필요로 한다. 이것을 민사상의 지해라고도 하는데 일반적으로 클레임은 민사상의 화해에 의하여 해결 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商事紛爭이 發生했을 때는 무엇보다도 紛爭의 解決을위하여 관계 당사자 간의 和解를 통한 紛爭의 訊速한 解決이 必要하다. 즉 貿易去來에서 빈번히 발생되는 貿易 클레임을 法院이나 調整인 혹은 仲裁人인에 의한 제3자의 介入에 의존하지 않고 Buyer와 Seller간의 자주적인 협상에 의하여 자체적 구속력을 가질 수 있는 어떤 合意에 도달할수 있다면 이는 가장 效果的이며 經濟的인 貿易 클레임의 解決方案이 될것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貿易클레임은 이미 쌍방의 이해 상반관계에서 형성된 상당한 意見不一致로 인하여 友好的인 合意에 도달하기 어려운 상황이므로 合

---

36 ) Neil Merritt,Business Law CNY,Sweet & Max Well CO.1966. p.115.

意에 의한 和解에 到達하기란 지극히 어렵고 많은 障碍要素가 存在한다.

이 解決方法은 우호적 解決의 代表的인 方法으로 相互가 거래상의 信用을 對外的으로 노출시키는 위험을 防止하는 동시에 장에의 去來增大를 위한 분위기에 더 이상의 損害를 끼치지말자는 것으로 貿易業者로서는 가장 바람직한 紛爭의 해결방법 이라고 할 수 있다.

## 2. 第3者의 介入에 의한 解決方案

가. 斡旋(Intermediation)

紛爭發生時 當事者間의 友好的인 해결이 不可能해지면 一方 當事者의 依賴에 따라 知識과 經驗이 풍부한 大韓商事仲裁院이 直接 介入하여 원만한 妥協이 되도록 도와주는 방법이 斡旋인것이다. 이 경우 당사자간의 비밀을 보장하고 去來의 지속을 하도록하는 장점이 있는반면,당사자 쌍방의 협력을 얻지 못하면 실패하는 短點도 있다.

나. 調整(Conciuation)

당사자가 紛爭의 해결을 仲裁에 부탁한 경우, 仲裁節次를 進行하기에 앞서 간편하게 해결하면서 效果를 仲裁 判定과 同一하게 하는 것이다. 즉

調停人이란 兩當事者가 第3者, 다시 말해서 調停人에게 紛爭 解決安을 마련해줄 것을 付託하고 그가 마련한 調停에 同意함으로서 最終的으로 解決하는 方法이다.

調整후 仲裁를 申請한 當事者 一方 또는 쌍방의 申請이 있는 경우에만 행하여지는 것으로 조정안이 成立되면 그 調停 決定은 仲裁判定과 同一한 效力을 갖게 되며 따라서 當事者間에는 法院의 確定判決과 同一한 效力이

發生한다. 37)

그러나 一定忌日(30일) 以內에 調停案이 成立되지 못할 境遇 調停節次 自動的으로 폐기되면서 商事仲裁規則에 따라 仲裁節次로 修行하게 된다.38)

다. 仲裁(Arbitration)

仲裁라함은 當事者間의 合意에 의하여 私法上의 原理 및 其他 法律關係에 의한 紛爭을 法院의 訴訟節次에 의하지않고 私人인 제3자를 仲裁人으로 선정하여 그 紛爭의 解決을 仲裁의 決定에 맡기는 同時에 最終的으로 그 決定에 服從함으로써 紛爭을 解決하는 制度를 말한다.39)

仲裁에 의하여 紛爭을 解決하기 위해서는 當事者間에 仲裁에 의하여 紛爭을 解決한다는 合意 (仲裁合意 Cabitration agreement)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仲裁制度를 利用할수 없다.

이점은 調停의 경우와 같으나 조정의 경우에는 제3자의 조정안에 대하여 受託할 것인가의 與否는 당사자의 自由意思에 속하는데 仲裁에 있어서는 當事자는 民事訴訟法 第42項에 該當하는 境遇를 除外하고는 仲裁判定을 拒否할 수 없다.

一般的으로 말하기를 "仲裁는 訴訟보다 낫고 조정은 仲裁보다 나으며 紛爭의 豫防은 조정보다 낫다"고 했다.40)

따라서 貿易業에 從事하는 사람이라면 아마도 많은 費用과 長期間을 요하는 訴訟에 의하여 紛爭을 解決하는것 보다는 訊速하고 費用이 적게들며 節次가 簡便하고 機密이 保障되면서 公正하고 合理的인 紛爭解決方法인

---

37) 商事仲裁規則 第17條 3項.
38) 商事仲裁規則 第17條 4項.
39) 森井清, "國際商事仲裁" (東京:동양경제신보사 1970) p.12.
40) Clive M. Schmitthoff, The Export Trade. London. Steven & Sons Limited. p.345.

仲裁를 利用할것이며, 그 結果 誕生된것이 仲裁制度라고 할 것이다.41)

貿易 클레임의 解決을 위하여 當事자간의 直接交涉을 통한 解決에 失敗할 境遇 紛爭의 合理적 解決로서 점차 脚光을 받고있는 仲裁를 많이 採擇하고 있는것은 國際貿易紛爭에서 訴訟이나 其他의 解決機關으로서 解決의 滿足을 볼 수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訴訟과 仲裁가 어떠한 差異점이 있나 살펴본다.

41) 金寬雯 "仲裁制度의 發展을 위하여 " 大韓商事仲裁院 "仲裁" No.159 (1985. 4) p.2.

※ 訴訟과 仲裁의 比較

| 區 分 | 訴 訟 | 仲 裁 |
|---|---|---|
| 對 象 | 民事,刑事,選擧등 모든 紛爭 | 商人間의 商事紛爭(海量,建設證券,勞動,交通등과 특히 貿易紛爭) |
| 要 件 | 당해 法院이 당해권을 가질것 소제기가 유효할것, 당사자 能力이 있을것, 正當한 當事者일것, 權利保護의 資格과 必要가있을것 | 當事자간의 서면에 의한 仲裁 합의만 있으면 足하다. 다만 係爭物은 當事者가 自由로이 處分할수가 있어야 한다. |
| 判決의 效 力 | 拘速力(不可撤回性), 確定的 旣判力,執行力,形成力이 있다. | 法院의 確定判決과 同一한 效力(强制執行을 할 땐 法院의 執行 判決만 구하면 된다.) |
| 對外的 效 力 | 우리나라의 領土內에 있는 內國人과 韓國人에게 그 效力이 미치므로 國內的이다. | 우리나라 國民뿐만 아니라 外國人에게도 그 效力이 미치므로 國際的이다. |
| 迅速性 | 複雜한 訴訟制度화 審判制度 때문에 오랜시일이 걸린다. | 節次가 簡單하고 단 한번의 仲裁判定으로 紛爭이 終了되므로 매우 迅速하다.결국 迅速을 생명으로 하는 商事紛爭에 適合(통상 3個月내에 解決된다.) |

| 區 分 | 訴 訟 | 仲 裁 |
|---|---|---|
| 經 費 | 辯護士 報酬,印紙代 등의 엄청난 費用과 審級이 올라 갈수록 印紙代가 倍加 되며 辯護士도 다시 選任 해야 하므로 비경제적 이다. | 單審制 이어서 한번의 仲裁 費用支出로 족하므로 경제적 이다. |
| 審判者 | 法官이 判決을 하나 現實的으로 法官은 法理論 實務에는 밝지만 商去來의 實務와 慣習에 관한 경험이 적다. | 고도로 전문화되고 기술화된 오늘날의 商去來에 알맞는 중재인이 判定 하므로 개개의 분쟁에 따라 실정에 맞는 합리적 해결을 할 수 있다. |
| 公開性 | 訴訟은 公開主義가 원칙이므로 영업상의 秘密이나 개인의 秘密이 公開 되어 대외 信用度가 침해되기 쉽다. | 엄격한 非公開主義에 따라 개인의 秘密이 절대 보장 되므로 대외 信用의 侵害를 받을 우려가 없다. |

資料 : 大韓商事仲裁院

## 3. 契約의 철저 履行

가. 貿易契約의 成立要件

契約이란 一般的으로 法院에 提訴할수 있는 約束을 말한다. (A contract consists is an actionable promise or promises, A contract is a

set of promises that the courts will enforce)

이러한 契約을 一方 당사자간 請約에 대해 他方 당사자의 승락으로써 이루어 진다. 따라서 貿易契約도 다른 契約과 동일하게 請約과 承諾으로 성립한다.

또한 交易申請의 경우, 우리나라 民法에서는 兩申請이 상대방에게 도달되었을때 契約이 성립한다고 하고있어 契約成立에 긍정적인 취지를 채택하고 있으나 英美에서는 대체로 부정적인 견해를 취하고 있다. 따라서 offer가 교차된 경우에는 다시 확인을 하는것이 안전하다.

이처럼 貿易契約은 일방 당사자의 請約에 의해 他方當事者의 承諾으로 이루어지는데 당사자 일방에 의하여 상대방이 契約을 違反한것을 주장해서 法院 또는 仲裁法廷(arbitration tribunal)에 그 변제를 請求하게 된다.

(1) 請約(offer)

請約이란 일반적으로 일정한 案件에 따라 商品을 매도하겠다는 輸出者의 意思表示로서 賣渡人인 수출자는 合意된 契約條件에 따라 商品을 인도할 의무가 발생 하는 동시에 買受人인 수입자는 이에대한 대가로 貨金을 지불할 의무가 발생하는 것이다.

請約은 상대방에게 도달하여야 效力이 발생하며 (民法 제11조 2항 뷔엔나 협약 제5조 1항)그 유효기일은 請約者가 자유로이 정할수 있으나 유효기일이 없는 請約을 合理的인 期間內에 承諾을 받기에 상당한 期間을 말한다. 貿易去來에서 契約不當者들은 請約의 發送時에는 신중을 기해야하며 특히 有效期間이 길거나, 혹은 有效期間이 없는 請約의 경우에는 價格變動에 유의해야 한다. 또 承諾期間이 명시되지 아니한 請約의 경우 상당

한 期間 즉, 合理的인 期間에 있어서 合理的이란 단순히 통상적인 사정만을 고려한다는 것이 아니고, 모든 사정을 다 고려하게 되는 아주 신축성 있는 用語이므로 이 "合理的"用語에 대한 解析이 각자마다의 차이점 때문에 紛爭이 발생하기 쉬우므로 가능한 유효기일을 정하지 않은 請約(free offer)을 하기 보다는 차라리 조건부 청약이나 確定請約을 하는것이 이상적이며 만일 그러한 free offer를 받았을 때는 이에 대한 확인후 承諾의 통지를 발송해야 후일 紛爭을 防止할 수 있겠다. 또 確定 請約의 경우 地域間의 時差등을 고려하여 기한표시에 지역표시도 명확히 해두는 것이 좋다.

(2) 承諾(acceptance)

請約에 대한 承諾은 契約을 성립시키는 行爲이다. 承諾이 있기까지는 아무도 구속하지 않는 철회가능한 請約만이 있을뿐이며 承諾이 있은 다음에는 兩 當事者를 구속하는 契約이 성립된다.

承諾은 有效期間內에 하여야 유효하며 완전한 承諾(complete acceptance) 즉, 無條件 承諾이어야 한다. 또 請約에 대하여 承諾이 있으면 契約은 成立되는데 契約의 成立時期에 관한 문제로서 發信, 到達 및 告知主義가 있다.

各國의 立法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 각국법 / 구분 | 한국 및 일본 | 독일 | 영·미 | Vienna협정 |
|---|---|---|---|---|
| 일반원칙 | 도달주의 | 도달주의 | 도달주의 | 도달주의 |
| 대화자간,전화,텔렉스등 | 도달주의 | 도달주의 | 도달주의 | 도달주의 |
| 우편 | 발신주의 | 도달주의 | 발신주의 | 도달주의 |

## 4. 制度的裝置의 利用

### 가. 클레임 處理 및 責任履行

흔히 紛爭事由가 발생했는데도 제기하지 못하여 提起權을 상실하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紛爭發生 사실의 통보는 當事者間에 제기 시한에 대한 約定이 있으면 그 시한내 제기하여야 하며 그러한 約定이 없을때에는 事由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韓國의 商法 69條에 의하면 買受人의 목적물의 檢査와 瑕疵通知 義務에 의하여 商人間의 賣買에 있어서 買受人이 목적물을 檢査와 瑕疵通知 義務에 지체없이 이를 檢査하여야 하며 瑕疵 또는 數量의 不足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賣渡人에게 그 통지를 발송하지 아니하면 이로인한 契約解除, 貸金減額 또는 損害賠償을 청구하지 못한다. 賣買의 목적물에 즉시 발견할 수 없는 瑕疵가있는 경우에 買受人이 6個月內에 발견한때에도 같다 라고 되어있으며 이러한 사항을 效率的으로 해결하기 위한 裝置를 살펴보면 貿易管理規程에는 다음과 같이 規程하고 있다.

貿易管理規程 5章 3節 2款 第24-1條 (仲裁)에 의하면 클레임의 제기를 받으면 迅速하게 처리하여야 하며 當事者間 解決이 곤란할 경우에는 즉시 大韓商事仲裁院의 알선, 조정 또는 중재에 의하여 解決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있으며 클레임조사 및 處理는 第24-3條에 의하여 ①大韓商事仲裁院은 輸出入관련 클레임을 접수 하면 이를 신속 공정하게 처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클레임 當事者 또는 관계인으로 부터 진술을 받거나 關係書類의 提出을 要求하고 사실조사를 할 수 있다. ② 輸出入 클레임 當事者 및 關係人은 大韓商事仲裁院의 클레임처리를 위한 陳述要求, 書類提出 要求 및 事實調査에 적극 協調하여야 한다. 仲裁判定을 받은 當事者 및 關係人

은 신속한 責任履行을 하여야 하며 第24-4條 (責任履行)를 살펴보면 輸出入 클레임 當事者 또는 關係人은 故意的으로 클레임 해결을 遲延시키거나 責任을 회피 하여서는 아니되며 클레임 合議事項이나 大韓商事仲裁院의 仲裁判定을 지체없이 履行하여야 하며 이행을 안할시에는 法院을 통하여 강제 집행할 수 있다.

나. 制　裁

貿易管理規程 8장에는 제재에 대해 규정되어 있는데 제36-3조(클레임에 대한 제재)를 살펴보면 ①大韓商事仲裁院은 클레임 當事者 또는 關係人이 고의적으로 클레임 解決을 遲延시키거나 責任을 회피함으로써 對外信用을 손상한 경우외는 다음 各號의 制裁를 관계기관에 건의할수 있다.

1) 對外貿易法 第30條 및 第32條와 第33條에 의한 制裁

2) 輸出檢査에 의한 制裁

3) 輸出入 許可(承認)의 制限

4) 輸出入 추천 제한

② 對外貿易法, 輸出檢査法 또는 기타 法令에 의하여 商工部長官으로부터 權限을 위임받은 기관이 前項의 건의를 받으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審査 處理 하여야 한다.

이 條項은 商工部 公告 第 5319 號의 2項을 좀 구체화한 것으로 국내업자의 고의적인 클레임 解決遲延이나 責任을 회피할 경우에는 貿易去來法, 輸出檢査法 또는 기타 法令에 의해 商工部長官으로부터 權限을 위임받은 기관 즉 외국환은행, 한국무역협회, 한국은행, 공업진흥청, 수산청 등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이를 심사, 처리하도록 한것은 우리나라 수출진흥정책에 위배되는 악덕업자들을 근절시키려는 의도가 있다고 하겠다.

# 第6章 結 論

以上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 輸出産業構造가 輕工業分野에서 重化學工業分野로 이전됨에 따라 클레임의 양상도 많이 변모해가고 있다.

本 硏究에 나타난 우리나라의 클레임 實態를 살펴보면 原因別, 品目別, 地域別, 그리고 클레임 處理別 어느것 하나 만족할 만한 水準에 와 있지 않음 을 발견할 수 있었다. 본 연구결과에 나타난 특징을 要約하여 보면

첫째, 우리나라 年度別 輸出額은 지난 8年(1981-1988)의 期間中 年平均 16.1%의 伸張率을 記錄하였으나 클레임은 件數·額數 모두 1984年과 1986年을 基準으로 '84年 이전의 높은추세에서 다시 '84年 이후 '86年까지는 비교적 긍정적 측면으로 건수·액수 모두 減少하는 추세였으나 88년경엔 다시 증가한다는 점이었다.

둘째, 原因別 클레임에서 契約不履行과 品質不良으로 인한 클레임이 가장 높은 점에서 輸出商品에 대한 契約의 성실성과 특히 아직도 고도의 질 높은 품질이 量産되지 않는 점에서 이의 問題點이 컷고 다만 원인별 클레임 에서는 '84年 이전의 경우 件數가 높고 額數가 적은 반면 '86年경엔 건수·액수 모두 낮은추세였으나 '88年엔 다시 높은 추세로 오히려 해가 갈수록 우수한 輸出商品이 量産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는 面이 지적되고 있다.

세째, 品目別 클레임에서 기계·중화학 제품의 중공업 제품의 클레임이 높은 점에서 앞으로 우리나라의 主要 輸出商品이 중화학제품으로 轉換될 과정에서 바람직하지 않는 부정적 요소가 있어 이의 改善策이 시급하다고

본다. 특히 件數面에서 감소하는 추세였으나 額數가 커지는 점에서 이의 對應策이 요구된다.

네째, 地域別 클레임으로 아직도 지역편중이 심하여 구미, 아세아등에 클레임조차 편중되어 '84年, '86年, '88年 모두 件數 81.0%, 額數 90.0%의 높은 比率을 보여 이 지역의 집중화현상을 막아야 하겠다.

다만, 이分野의 硏究 중 클레임 處理內容에서 중재재판의 처리과정보다 合意에 의한 處理가 해가 갈수록 높은 점에서 바람직한 현상을 발견할 수 있었다.

包裝에관한 클레임이 발생한 경우에는 國際貿易에서는 반드시 商品의 張距離 輸送이 뒤따르기 때문에 防水되고 견고한 자재로 商品을 包裝하여야 한다. 물론 包裝을 잘하려면 그만큼 輸出費用이 增加하는 문제도 있겠지만, 輸入商이 상품을 인수하기 까지는 破損 혹은 破裂되는 경우가 없도록 기본적인 포장을 하여야 할 것이다.

貿易去來에 있어서 包裝을 견고히 하여야 함은 그내용물에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品質不良은 品質自體에 瑕疵가 있는 경우도 있지만 契約書上 品質條件規程이 不明確하기 때문에 發生되는 클레임도 발견할수 있다.특히 근래에 들어 우리나라의 技術水準이 많이 향상되어 있지만 輕工業製品에서의 품질에 관한 클레임은 故意的인 市場 클레임일 가능성이 많이 內在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豫防하려면 契約締結時 모든 去來條件들을 명확히 規定해 두는 것이 必要하다고 생각되어진다.

去來 當事者間에 일어난 클레임에 대하여 쌍방의 타협에의해 클레임을 합의하여 철회하는 경우 '82~88年 기간중 년평균 건수,金額이 7.3%, 9.8%

를 나타내고 있는데 이는 클레임解決에 있어서 바람직한 方法중의 하나라는 점에서 장려할만 하다고 하겠다.

가능한한 클레임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노력해야겠지만, 일단 부득이 發生된 클레임에 대해서는 당당하게 대처하여 서로의 인책사유를 따져서 정당한 선에서 合意가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클레임이 仲裁判定으로 해결되어 질때 클레임이 판정까지 가기전에 클레임 申請人과 被申請人 사이에 원만한 解決이 되도록 클레임해결에 있어 적극적인 자세로 대처해 나가야 할 것으로 사려된다.

本稿에서는 貿易클레임의 現況을 살펴보고 거기에 따른 問題點과 解決方案을 살펴 보았는데 貿易 클레임의 처리상 改善內容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國家에서 정책적으로 국내 업자들이 손해를 보지 않도록 거래 상대국들과 貿易紛爭에 관한 協定을 맺어두는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모든 국내업자들이 仲裁制度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政府次元에서 적극적인 뒷받침이 되어야 하겠다. 셋째, 클레임 處理節次에 대하여 무역실무자를 대상으로 實務教育이 필요하다. 넷째, 貿易클레임을 事前에 예방할수 있도록 政府의 유관기관 및 무역협회, 대한상공회의소 등 유관기관 및 관련업계와 相互間 새로운 情報를 교환하고 거래실정에 관한 의견을 折衝하여 상호 긴밀한 協助體制를 더욱 강화해 나가야 하겠다. 그렇게 함으로써 去來秩序를 더욱 견고히 하고 對外信用을 높임으로써 우리나라의 經濟力은 더욱 向上될 것이다.

# 參　考　文　獻


姜 二 秀, 貿易클레임. (서울) 三英社, 1984.

金 容 福, 貿易實務. (서울) 博英社, 1977.

吳 世 昌, 貿易實務論. (서울) 博英社, 1985.

李 春 三, 國際貿易槪論. (서울) 博英社, 1983.

金 安 植, 貿易實務. (서울) 博英社, 1985.

金 漢 秀, 最新貿易. 育成社, 1985.

金 行 權, 貿易契約. 貿易經營社, 1983.

　　, 申 東 洙. 貿易槪論. 貿易經營社, 1983.

---

大韓商事仲裁院. 商事紛爭 豫防 및 解決을 위한 仲裁制度의 案內, 1991.

大韓商事仲裁院 仲裁. VOL. 180 ~ 254. 1987 . 1 ~ 1993 . 3.

朴 大 衡, 貿易實務. 法文社, 1985.

張 致 順, 貿易클레임론. 東星社, 1986.

韓國貿易協會. 貿易年鑑, 1988.

鄭 翼 人, 商事仲裁論. (서울) 貿易經營社, 1984.

鄭 容 珉, 最新貿易 經營論. (서울) 博英社, 1984.

姜 二 秀, 클레임의 豫防과 解決 仲裁 166호. 1985.

朴 大 衡, 貿易事例. (서울) 法文社, 1980.

　　, 信用狀. (서울) 法文社, 1983.

---

金 平 祐, 仲裁制度 定着의 요결, 仲裁 135호. 1983.

韓 國 日 報, 1992. 2. 8.

中央經濟新刊， 1992. 2. 8.

中小企業新刊， 1992. 2. 17.

世 界 日 報， 1992. 6. 26， 1993. 1. 16.

日 刊 貿 易， 1993. 1. 16， 1993. 5. 12.

每日經濟신문， 1993. 1. 16.

中 央 日 報， 1993. 1. 17.

第一經濟新刊， 1993. 1. 18.

뉴 스 진 단， 1993. 4. 26.

東 亞 日 報， 1993. 2. 2.

內外關稅貿易新刊， 1993. 4. 21.

大韓商事仲裁院，仲裁，255號 93. 5.

Schmitthoff. Clive M. The Export Trade, London,

Stevens. & Sons Limited. 1981.

Neil Merritt. Business Law CNY : Sweet & Maxwell Co. 1966.

ABSTRACT

# A Study on the Present Status of Claims and the Preventive Plans of Them in Korean Trading Business

— The form of published in Korea and Japan —

Kang, Byung Sun
Graduate School of
Business Administantion
Major in Industrial
Management
Hansung University

In the present study, the status of trade disputes occurred in Korea was analysed, centered on the statistical data of claims which had been received and managed by an arbitrating(mediating) agency, The Korean Commercial Arbitration Board. In the first place, major analysis was done with the statistical data of claims from 1980 to 1988, and in the second place, rough analysis with the statistical data of claims from 1989 to the present 1993.

For a research method, data analysis and documentary review were used jointly.

The present thesis consists of Six chatpers and contents in each chapter are as follows :

Chapter 1 discusses the purpsose, method and scope of the study.

Chapter 2 explain types and causes of claims. Chapter 3 compares the characteristics and present status of claims in Korean tading business with those in Japan. The realities of the claims occurred are analysed with reference to a year term, cause, item, region, and claimed amount.

Chapter 4 discusses some problems of claims in Korean trading business and some preventive plans of them.

Chapter 5 describes some systematic devices for the efficient resolution of claims.

Chapter 6 concludes synthetically all the matters discussed above.

Summarized contents for the improvement of the management of claims are as fllows :

① It is mostly desirable that in order for home businessmen not to be financially damaged, the goverment makes some pacts concerning trade disputes with those countries which are involved in trading business with Korean trading businessmen.

② In a govermental dimension, positive support should be given to the trading businessmen at home so that they can mostly utilize a system of arbitration.

③ Practical education or training on the procedures of claims is required to be arranged to trading businessmen.

④ In order to prevent claims in trading before they happen, information exchange with some relevant goverment agencies such as Korea Traders Association, the Korea Chamber of Commerce and Industry, etc. and mutual cooperative structure for exchanging opinions on the realties of trade should be more consolidated.

⑤ The realtities of claims happening in Korea trading business should be analysed in a quaterly term, half year term, year term, and the analised data be publicly announced through news media so that trading businessmen can be highly awaken and consolidate their preventive measures of claims in trading.